CHAPTER 04.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4.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개요

기본방향

- 「2035 울주군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적 가치가 높고 중점적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정 계획에서 구역 유지 3개소, 구역 조정 4개소, 신규 구역 7개소로 총 1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 계획함
- 개별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역 특성 및 지정목적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구역별 경관관리 방향, 주요 관리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구분	구역명	경관관리 방향
주요 장소별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억온천단지	신불산과 조화되는 휴양관광지 경관을 위한 체계적 경관관리
	봉계한우불고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문화거리 창출을 위한 진입·가로경관 특화
	서생해안	특색있고 자연친화적 해안가 연출을 위한 가로·해양경관 관리
	진하해수욕장	대외적 관광지 이미지 강화를 위한 상업거리, 배후주거지 경관 관리
	언양읍성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읍성로 주변 경관관리
	KTX 울산역 역세권	기품있는 도심 첫인상 제고를 위한 울산역세권 심도심 경관관리
	구영로	도시적인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지 경관관리
동해남부선 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남창역	인상적인 남창역 역세권 첫인상 및 누구나 걷기 좋은 정주경관 연출
	덕하역	전통시장의 정취가 느껴지는 덕하역 상업가로경관 창출
	망양역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경관 난립 방지 및 관리
	서생역	역세권 신도시 격차 방지를 위한 서생역 관문경관 관리
지구단위계획 연계 중점경관관리구역	천상 평천지구	천상천 중심 자연친화적 주거지 경관 관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태화강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전원도시 창출
	웅촌 곡천지구	회야강,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관리

경관심의/협의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울주군 경관조례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및 사전협의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중점경관관리구역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구역별 경관의 관리목표와 관리대상을 제시하고 건축 용도별로 세분화된 지침 내용을 구성함

심의대상 울주군 경관조례 제24조	가. 4층 이상의 건축물 나.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다.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협의대상 울주군 경관조례 제25조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3층 이하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등억온천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울주군 대표 관광지인 신불산과 등억온천단지의 조화 및 친환경적 경관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단지 내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인공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자연환경보전지역	①	관광휴양, 숙박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관광휴양, 숙박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도깨비로, 알프스온천2·3길 등 숙박시설이 즐비한 주요가로변의 정돈을 위해 1층부 건축선 인접 건축물과 통일화 - 작괘천에서 신불산 능선 조망 시 열린경관 제공을 위해 건축물 고도 관리 - 작괘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넓은 장변을 신불산 능선에서 직각배치장 - 숙박업, 온천시설 지상주차장은 도로 배후면에 배치하고 도로 전면 배치 시 관목식재로 차폐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배치 - 건축 배치계획시 건축물의 넓은 입면을 신불산 방향과 직각배치하여 작괘천 방면에서 조망시 신불산을 향한 조망통경 확보
형태 및 외관	- 도깨비도로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 및 위압감 완화를 위해 건축물 폭이 30m 이상의 경우 입면분절 디자인 적용 - 신규 건축물 형성 시 신불산 능선과 조화, 이색적 관광단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박공지붕, 경사지붕 사용 - 숙박시설과 연접하여 옹벽, 담장 형성 시 벽면녹화(담쟁이넝쿨, 녹화판넬, 관목식재 등)로 옹벽면적의 2/3 이상 녹화 - 실외기 설치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면에 배치하며 옥상 설비시설 설치 시 가림막시설로 차폐 - 인공적 경관으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방지 위해 조립식, 컨테이너 건축물 형성 지양 - 담장 및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담쟁이, 녹화판넬, 관목류 및 식재화단 조성 등으로 발생 면적의 2/3 이상 녹화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도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를 20㎝ 이내로 설정 (단,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박공지붕,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경사지붕의 경사는 3/10 이상~ 7/10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붕 속 다락 설치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경사지붕에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오픈스페이스	
통합	- 단지 내 공원 조성 시 신불산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 투수성 바닥재, 잔디블럭 활용 - 쾌적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도깨비도로, 알프스온천로 내 계절식재 지속적 관리

옥외광고물	
통합	-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판류형간판, 창문이용 부착형 광고물, 옥상간판 설치 지양 - 건축물 상층부 및 옥상에 고채도의 간판, 네온사인 설치 지양 - 실사 사진과 같은 풀컬러 부착형 광고물은 간판 전체 면적의 1/10 미만으로 조성 - 돌출형 광고물의 가로폭은 게시틀 접합부를 포함하여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2개만 허용(곡각지점 등은 3개 허용) - 간판조명 계획시 원색계열이 야광, 네온 등의 광원 사용을 지양하고 외부로부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백라이트방식, 내장조명방식 등을 사용

공공시설물	
통합	- 등억온천단지 내 일관된 가로경관 연출 및 알프스 웰컴센터와 동선연계를 위해 안내 사인물 특화 디자인 통합관리

야간경관	
통합	- 장식조명 설치시 신불산 및 작괘천 방향 조명 및 하늘로 상향되는 조명 등 광원 움직임이 심한 연출 지양 - 정온한 휴양관광지 이미지 보전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 시 색온도 3000k 이하의 조명 사용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컷오프 등기구를 사용하여 상향광이나 생태지역으로의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3.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3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3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N계열)

8.4Y 6.5/1 C 20 M 21 Y 28 K 11	10YR 7/1 C 20 M 23 Y 27 K 4	1.25YR 7/2 C 20 M 28 Y 31 K 0	3.8GY 7.5/2 C 20 M 20 Y 30 K 1
5GY 7/2 C 21 M 20 Y 30 K 6	3.5YR 7/2 C 20 M 28 Y 32 K 0	N7 C 0 M 0 Y 0 K 32	3Y 7/1.5 C 20 M 23 Y 30 K 8
5Y 6/1 C 20 M 21 Y 26 K 20	6Y 8/1 C 19 M 21 Y 27 K 0	8GY 6.5/1.5 C 24 M 20 Y 27 K 15	8GY 8.5/1 C 18 M 14 Y 20 K 0
5YR 6.5/ 2 C 20 M 28 Y 33 K 10			

■ 강조색 (Y, YR, GY 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GY 3/2 C 23 M 19 Y 25 K 44

■ 3색 배색안

봉계한우불고기특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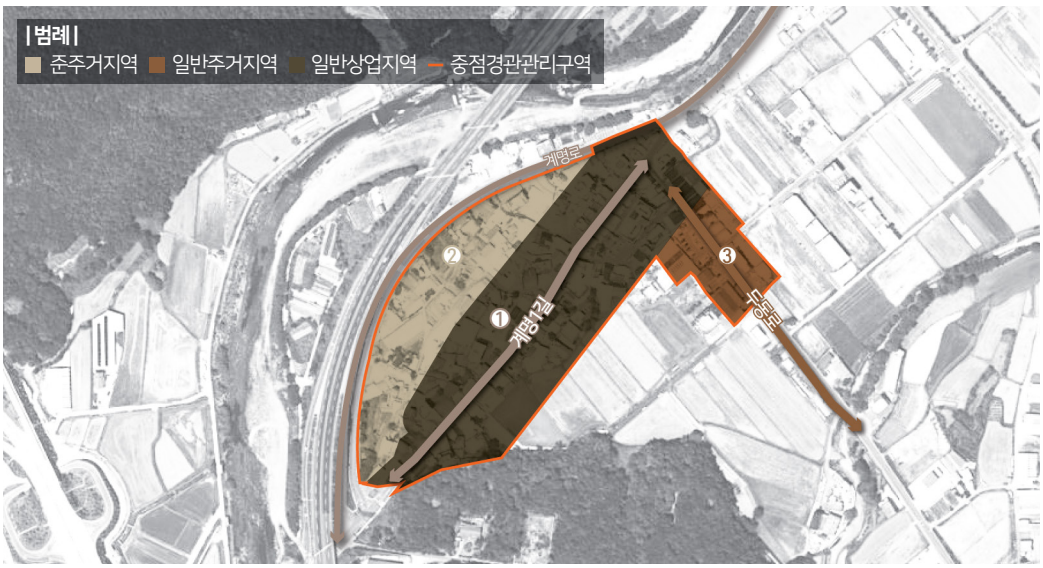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봉계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을 통한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진입경관, 가로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상업지역	①	상업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준주거지역	②	근린생활시설	
일반주거지역	③	단독 및 점포주택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시각적으로 편안한 가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상업가로의 인근 건축물과 비슷한 고도의 건축물 높이 설계 - 주차장 배치 시 보행 접근성과 상업시설 개방성을 고려하여 상업가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건축물 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주요 지입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될 경우 식재차폐하여 인공성을 저감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하고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 상업가로의 밝은 이미지 형성을 위해 어두운 분위기 조성 및 개방성을 저해하는 상업시설 천막시설물 설치 지양 - 과도하게 노후되어 가로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입면 정비 - 건축물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의 폭(1m)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건축물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 실외기 설치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오픈스페이스	
통합	-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의 상징성 및 진입인지성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상징 게이트 설치 - 여유롭고 편안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문객의 휴식공간 및 쌈지공원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 한우불고기특구 관련업소의 경우 특구 내 표준디자인 간판 적용
- 판투형 간판을 배제하고 입체형, 문자형 간판을 설치
- 간판의 면적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1/3 이내,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 적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규모 및 위치 등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가로폭이 해당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적용
세로형 간판	가로폭 80cm(게시틀 접합부 포함)이내로 주변 건축물의 부착위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
돌출 간판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10미터 미만으로 하며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의미)은 50㎡를, 간판면적의 한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공공시설물

통합

- 지주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가로 내 지주 시설물 통합화
- 봉계한우불고기특구와 봉계재래시장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통합 안내시설 설치
- 이용 편의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종합안내사인물 설치

야간경관

통합

- 옥외광고물의 조명과 중첩되어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야간경관 계획 수립
- 광조고명은 조광기를 추가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 계열)

USC-01	USC-03	USC-47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6.5Y 8.2/0.1 C 15 M 15 Y 16 K 0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7.1Y 8.8/0.2 C 9 M 9 Y 10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 (Y, YR, GY 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5Y 6/1 C 20 M 22 Y 26 K 15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하고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 - 외부지상주차장 계획시 가급적 건축부지의 배후면에 배치하고 주요 진입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될 경우 식재차폐하여 인공성을 저감
형태 및 외관	- 봉계 한우불고기거리의 품격 증진을 위해 연접한 취락지의 노후 건축물 정비 - 취락지 활력 부여 위해 노후 담장 및 건축물 입면 벽화 및 색채 적용 - 담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또는 목재,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낮은 담장으로 계획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실외기 설치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 한우불고기특구 관련업소의 경우 특구 내 표준디자인 간판 적용 - 판투형 간판을 배제하고 입체형, 문자형 간판을 설치 - 간판의 면적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1/3 이내,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 적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규모 및 위치 등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가로폭이 해당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적용
세로형 간판	가로폭 80cm(게시틀 접합부 포함)이내로 주변 건축물의 부착위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
돌출 간판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10미터 미만으로 하며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의미)은 50㎡를, 간판면적의 한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야간경관

통합

- 옥외광고물의 조명과 중첩되어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야간경관 계획 수립
- 광조고명은 조광기를 추가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 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 (Y, YR, GY 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5Y 6/1 C 20 M 22 Y 26 K 15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구역 ③ :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시각적으로 편안한 가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상업가로의 인근 건축물과 비슷한 고도의 건축물 높이 설계 - 주차장 배치 시 보행 접근성과 상업시설 개방성을 고려하여 상업가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건축물 배면에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성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설계
형태 및 외관	- 상업가로의 밝은 이미지 형성을 위해 어두운 분위기 조성 및 개방성을 저해하는 상업시설 천막시설물 설치 지양 - 과도하게 노후되어 가로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입면 정비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설계 (경사 3/10 이상~7/10 이하) - 경사지붕의 경사를 이용한 지붕 속 다락을 설치할 수 있으나, 다락 설치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경사지붕에 돌출되지 않도록 유의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고,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유의 - 담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또는 목재,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낮은 담장 계획

오픈스페이스	
통합	-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의 상징성 및 진입인지성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상징 게이트 설치 - 여유롭고 편안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문객의 휴식공간 및 쌈지공원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참조 -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폭이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로 적용 -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10미터 미만으로 하며 1면 면적(입체형 경우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의미)은 50㎡를, 간판면적의 한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의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지주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가로 내 지주 시설물 통합화 - 봉계한우불고기특구와 봉계재래시장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통합 안내시설물 설치 - 이용 편의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종합안내사인물 설치

야간경관	
통합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 옥외광고물의 조명과 중첩되어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야간경관계획 수립 - 주거지역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 (Y,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0GY 2/4 C 29 M 19 Y 28 K 52
3.75GY 4/6 C 24 M 19 Y 47 K 34	3.75GY 7/4 C 22 M 20 Y 39 K 5	5Y 6/1 C 20 M 22 Y 26 K 15	

■ 4색 배색안

서생해안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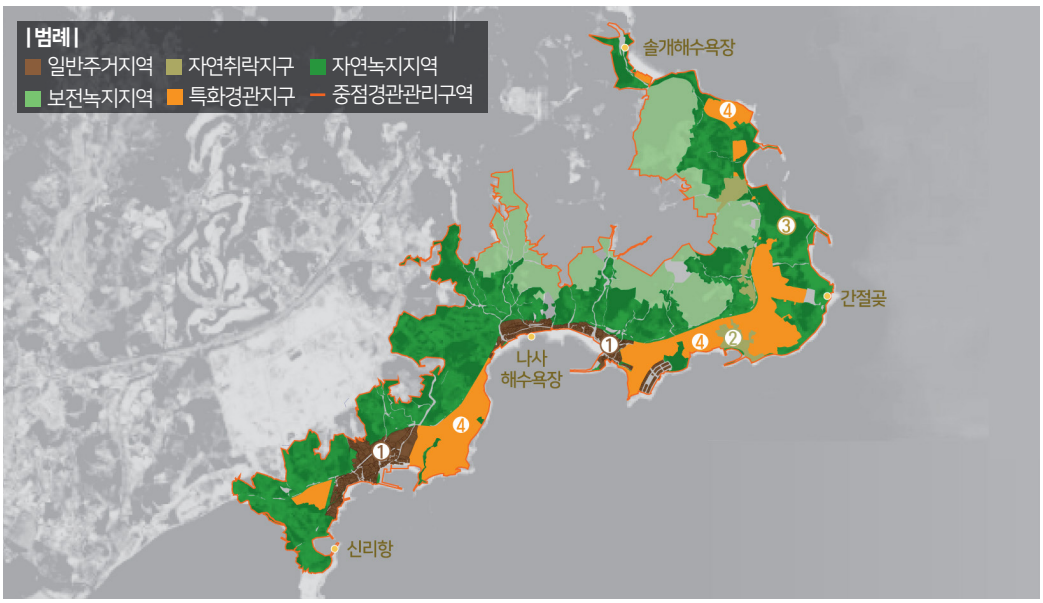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울주군 해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지 및 어촌마을의 특색 확보를 위해 해안경관 및 어촌마을 경관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공통	①, ②, ③, ④	단독 및 점포주택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주거용지	①	근린생활 및 숙박 시설	
자연취락지구	②		
자연녹지지역	③	창고 및 공장	
특화경관지구	④	옥상돌출공간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②, ③, ④ : 공통)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해맞이로, 나사해안로, 간절곶해안로의 개방적이고 연속적인 해안경관 조성을 위해 해안측면 건축물 고도 관리 - 정돈된 해안경관을 위해 주요 해안도로에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선 통일화 - 건축물 내부 이용시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신축되는 건축물 입면이 해안도로에 면하도록 배치 - 해안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해안쪽으로 낮아지는 고도의 건축물 조성 - 해안에 접한 건축물은 개방성 확보 및 경관 차폐도 완화를 위해 일정 간격 이격배치 - 해안경관지로 진입하는 해맞이로나 해안변에 면할 경우 전면도로 또는 해안 방향으로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 식재하거나 개방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을 계획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조성
형태 및 외관	- 해안경관 및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성을 위해 과도한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조성 지양 - 정돈된 건축물 외관을 위해 실외기 등의 외부설비는 외부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면 또는 설치장소 마련 - 재료 고유 색상 사용 및 주변색과의 대비를 고려하여 상하부 구조 도장 시 무채색 계열 또는 같은 색상 계열 사용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박공지붕, 곡선지붕 등 다양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 - 지붕 속 다락 설치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지붕에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 차폐형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 발생시 낮은 돌담, 생울타리, 투시형 펜스 등을 계획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 설치가 불가하고,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옥외광고물	
통합	- 입간판 설치 시 통행 및 조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의 해안쪽이 아닌 육지쪽에 설치 - 색채는 가급적 최대 3색 이내의 배색으로 표현 - 실사사진 및 풀컬러는 간판 전체 면적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 시설의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야간경관	
통합	- 울주군만의 해양관광 특색 확보를 위해 해안자원 간 연계를 통해 연속적이고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성 - 해안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밝고 경쾌한 조명 색채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 (Y, GY, PB, B, N 계열)

8.4Y 7.8/0.8 C 18 M 19 Y 24 K 0	2.5PB 7/2 C 27 M 23 Y 20 K 3	5B 8/1 C 20 M 17 Y 16 K 0	2.3PB 7/2 C 27 M 23 Y 20 K 3
3GY 8/2 C 17 M 16 Y 28 K 0	6GY 6/3 C 24 M 20 Y 33 K 15	6Y 8.5/1 C 0 M 0 Y 0 K 42	3Y 8/1.5 C 27 M 23 Y 20 K 3
7GY 8/2 C 24 M 19 Y 19 K 0	9GY 6/2.5 C 27 M 20 Y 30 K 19	2.3PB 7/2 C 27 M 23 Y 20 K 3	2.3PB 7/2 C 0 M 0 Y 0 K 42
N6 C 0 M 0 Y 0 K 42			

■ 강조색 (Y, GY, PB, B, BG 계열)

7.5Y 2/2 C 21 M 19 Y 28 K 4	2.5PB 2/4 C 38 M 29 Y 19 K 44	1.25PB 2/2 C 28 M 24 Y 19 K 49	2.5B 2/2 C 28 M 22 Y 19 K 51
10B 2/2 C 29 M 24 Y 19 K 49	5GY 2/1 C 20 M 19 Y 22 K 54	3.75GY 2/2 C 21 M 19 Y 25 K 54	10BG 2/2 C 28 M 21 Y 19 K 52
2.5PB 4/6 C 48 M 33 Y 20 K 21	2.5PB 6/8 C 56 M 35 Y 17 K 0	2.5PB 8/6 C 31 M 16 Y 2 K 0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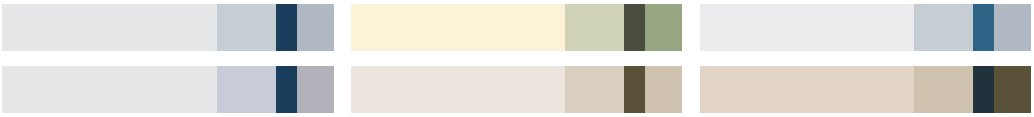

|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건축물 (구역 ①, ② : 일반주거용지, 자연취락지구)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해안경관지로 진입하는 해맞이로나 해안변에 면할 경우 전면도로 또는 해안 방향으로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식재하거나 개방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을 계획 - 해안에 면한 건축물은 최대한 건축선을 이격하고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여 해안방향의 조망성 확보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 미만으로 계획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박공지붕, 곡선지붕 등 다양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 - 지붕 속 다락 설치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지붕에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 담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계획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을 일치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 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실외기 설치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배면에 배치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해안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해안방향에서의 노출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나사해수욕장의 일관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해안가 안내사인물 특화 디자인 통합 설치 - 간절곶해안길 평동항 일대 방문객 휴식 및 해안 전망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 판류형 간판을 배제하고 입체형, 문자형 간판 설치
- 간판의 면적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1/3 이내,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적용
- 실사사진과 같은 풀컬러 사용은 간판면적의 1/10을 넘지 않도록 주의
- 간판조명 계획시 원색계열이 야광, 네온 등의 광원 사용을 지양하고 외부로부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백라이트방식, 내장조명방식 등을 사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명도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가로폭이 해당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적용 입체형 간판의 글자폭은 60cm 이하로 표기
세로형 간판	가로폭 80cm(게시틀 접합부 포함)이내로 주변 건축물의 부착위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
돌출 간판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설치 금지

야간경관

통합

- 장식조명 설치 시 바다(진하해수욕장) 방향으로 누광되는 조명이나 옥탑조명 및 상향조명 등 하늘로 상향되는 조명 연출, 광원을 심하게 움직이는 연출하지 않도록 주의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컷오프 등 기구를 사용한 상향광이나 해양생태지역으로의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 (Y, GY, PB, B, N 계열)

8.4Y 7.8/0.8 C 18 M 19 Y 24 K 0	2.5PB 7/2 C 27 M 23 Y 20 K 3	5B 8/1 C 20 M 17 Y 16 K 0	2.3PB 7/2 C 27 M 23 Y 20 K 3
3GY 8/2 C 17 M 16 Y 28 K 0	6GY 6/3 C 24 M 20 Y 33 K 15	6Y 8.5/1 C 0 M 0 Y 0 K 42	3Y 8/1.5 C 27 M 23 Y 20 K 3
7GY 8/2 C 24 M 19 Y 19 K 0	9GY 6/2.5 C 27 M 20 Y 30 K 19	2.3PB 7/2 C 27 M 23 Y 20 K 3	2.3PB 7/2 C 0 M 0 Y 0 K 42
N6 C 0 M 0 Y 0 K 42			

■ 강조색 (Y, GY, PB, B, BG 계열)

5Y 4/1 C 19 M 22 Y 26 K 34	2.5Y 4/2 C 19 M 24 Y 32 K 32	5GY 3/1 C 20 M 19 Y 23 K 45	7.5B 4/2 C 30 M 23 Y 19 K 32
6.25PB 3/2 C 27 M 26 Y 19 K 39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25PB 2/2 C 28 M 24 Y 19 K 49	10BG 2/2 C 28 M 21 Y 19 K 52

■ 3색 배색안

| 창고 및 공장시설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해안경관지로 진입하는 해맞이로나 해안변에 면할 경우 전면도로 또는 해안 방향으로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식재하거나 개방 - 주차장 계획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을 계획 - 자연지형을 충분히 고려하되 도로 방향으로 장대한 벽면이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 평동길 일대 취락지의 활력 부여를 위해 노후담장 및 건축물 벽면 색채 정비 - 장대한 벽면/ 지붕면은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을 부여하여 위압감을 저감 - 경계부 담장의 설치는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차폐가 가능한 수목식재, 석재, 나무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인공성을 저감 (수목 및 조경식재시 해풍에 강한 수종 채택) - 실외기, 환풍구 등 부속설비 발생시 건축 배후나 측면에 집약하거나 가림막 등으로 차폐하여 설치

오픈스페이스	
통합	- 간절곶 공원 내 정체성 확립을 위해 특색을 저해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조형물 설치 지양 - 간절곶해안길의 편의성과 조화성을 위해 보행로 색채 및 패턴 정비 및 자전거도로 경계 표시

야간경관	
통합	- 창고 및 공장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컷오프 등기구를 사용하여 상향광이나 해양생태지역으로의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5이상)	저채도 (1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3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0.6Y 9.7/1 C 0 M 1 Y 5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GY, PB, N계열)

8.4Y 7.8/0.8 C 18 M 19 Y 24 K 0	2.5PB 7/2 C 27 M 23 Y 20 K 3	5B 8/1 C 20 M 17 Y 16 K 0	2.3PB 7/2 C 27 M 23 Y 20 K 3
3GY 8/2 C 17 M 16 Y 28 K 0	6GY 6/3 C 24 M 20 Y 33 K 15	6Y 8.5/1 C 0 M 0 Y 0 K 42	3Y 8/1.5 C 27 M 23 Y 20 K 3
7GY 8/2 C 24 M 19 Y 19 K 0	9GY 6/2.5 C 27 M 20 Y 30 K 19	2.3PB 7/2 C 27 M 23 Y 20 K 3	2.3PB 7/2 C 0 M 0 Y 0 K 42
N6 C 0 M 0 Y 0 K 42			

■ 강조색 (Y, GY, PB, B 계열)

5Y 4/1 C 19 M 22 Y 26 K 34	2.5Y 4/2 C 19 M 24 Y 32 K 32	5GY 3/1 C 20 M 19 Y 23 K 45	7.5B 4/2 C 30 M 23 Y 19 K 32
6.25PB 3/2 C 27 M 26 Y 19 K 39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25PB 2/2 C 28 M 24 Y 19 K 49	10BG 2/2 C 28 M 21 Y 19 K 52

■ 4색 배색안

진하해수욕장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관광지 품격 증진 및 진하해수욕장의 대외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상업경관, 배후 주거지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상업용지	①	상업, 숙박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주거용지	②	단독주택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상업, 숙박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가로 조화성을 위해 인근 건축물과 유사한 높이로 규제 및 해안쪽으로 낮아지는 고도의 건축물 조성 - 진하해변길 입면 차폐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분절 디자인을 적용하여 위압감 완화 - 개방적 상업가로 연출을 위해 진하길의 건축물은 도로변으로 공지를 전면 배치하고 경계부 녹지 조성 - 개방성과 접근성을 위해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을 통한 외부 노출 최소화 - 해안에 면한 건축물은 최대한 건축선을 이격하고 해안방향으로 건축물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계획하여 해안방향의 조망성 확보 - 천공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 해안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장변 길이는 60m 미만으로 계획
형태 및 외관	- 보행 편의성 및 가로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진하해변길 상업시설의 불법 가설시설물 규제 - 정돈된 해안가로 조성을 위해 인근 건축물의 색채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외장재 및 색채 선택 - 담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계획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실외기 설치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해안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해안방향에서의 노출 금지) - 해안풍경에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 고층부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오픈스페이스	
통합	- 방문객의 편의성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진하해변에 조성된 휴식공간의 지속적 관리 및 정비 - 진하해변길와 진하해수욕장 휴식공간 간 연계성 향상 및 개방성을 위한 방풍림 및 불법 주차 관리

옥외광고물	
통합	- 판류형 간판 및 옥상간판 설치를 지양하며 입체·문자형 등 간결한 디자인 적용 - 돌출형 옥외광고물은 가로 80cm, 세로 7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성 - 빌딩명판 외 간판 설치는 3층까지 허용하고 인접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과 동일한 위치 배치 - 1층 가로형 옥외광고물 높이는 지면에서 3~4m 사이에 높이를 통일하여 설치 - 해식에 강한 재료인 석재와 스틸소재 등 사용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참조 - 간판의 면적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1/3 이내,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적용 - 실사사진과 같은 풀컬러 사용은 간판면적의 1/10을 넘지 않도록 주의 - 간판조명 계획시 원색계열이 야광, 네온 등의 광원 사용을 지양하고 외부로부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백라이트방식, 내장조명방식 등 사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명도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가로폭이 해당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적용 입체형 간판의 글자폭은 60cm 이하로 표기
세로형 간판	가로폭 80cm(게시틀 접합부 포함)이내로 주변 건축물의 부착위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
돌출 간판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진하해수욕장의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재질 및 색채의 공공시설물 설치

야간경관	
통합	- 명선도 야간경관과의 연계 및 진하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연속적이고 은은한 야간경관 조성 - 옥외광고물의 조명과 중첩되어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야간경관 계획 수립 - 장식조명 설치시 바다(진하해수욕장) 방향으로 누광되는 조명이나 옥탑조명 및 상향조명 등 하늘로 상향되는 조명 연출, 광원을 심하게 움직이는 연출은 계획 지양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컷오프 등기구를 사용하여 상향광이나 해양생태지역으로의 누설광을 방지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 연출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블루 계열은 채도 6까지 허용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N8 C 0 M 0 Y 0 K 2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N9 C 0 M 0 Y 0 K 1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 보조색(Y, GY, PB, B, N계열)

8.4Y 7.8/0.8 C 18 M 19 Y 24 K 0	2.5PB 7/2 C 27 M 23 Y 20 K 3	5B 8/1 C 20 M 17 Y 16 K 0	2.3PB 7/2 C 27 M 23 Y 20 K 3
3GY 8/2 C 17 M 16 Y 28 K 0	6GY 6/3 C 24 M 20 Y 33 K 15	6Y 8.5/1 C 0 M 0 Y 0 K 42	3Y 8/1.5 C 27 M 23 Y 20 K 3
7GY 8/2 C 24 M 19 Y 19 K 0	9GY 6/2.5 C 27 M 20 Y 30 K 19	2.3PB 7/2 C 27 M 23 Y 20 K 3	2.3PB 7/2 C 0 M 0 Y 0 K 42
N6 C 0 M 0 Y 0 K 42			

■ 강조색 (Y, GY, PB, B 계열)

7.5Y 2/2 C 21 M 19 Y 28 K 4	2.5PB 2/4 C 38 M 29 Y 19 K 44	1.25PB 2/2 C 28 M 24 Y 19 K 49	2.5B 2/2 C 28 M 22 Y 19 K 51
10B 2/2 C 29 M 24 Y 19 K 49	5GY 2/1 C 20 M 19 Y 22 K 54	3.75GY 2/2 C 21 M 19 Y 25 K 54	10BG 2/2 C 28 M 21 Y 19 K 52

■ 3색 배색안

| 단독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가로 조화성을 위해 인근 건축물과 유사한 높이로 규제 및 해안쪽으로 낮아지는 고도의 건축물 조성 - 진하해변길 입면 차폐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분절 디자인을 적용하여 위압감 완화 - 주차장 계획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 계획 - 해안경관지로 진입하는 진하길, 해맞이로에 면할 경우 전면도로 방향으로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식재하거나 개방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설치
형태 및 외관	- 배후 주거지의 활력있는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 및 담장의 도장 및 벽화 적용 및 지붕 정비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박공지붕, 곡선지붕 등 다양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 (지붕 속 다락 설치시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지붕에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 차폐형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 발생시 낮은 돌담, 생울타리, 투시형 펜스 등을 계획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옥외광고물	
통합	- 실사사진과 같은 풀컬러 사용은 간판면적 전체의 1/10을 넘지 않도록 계획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의 설치 금지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역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블루 계열은 채도 6까지 허용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 (Y, GY, PB, B, N계열)

8.4Y 7.8/0.8 C 18 M 19 Y 24 K 0	2.5PB 7/2 C 27 M 23 Y 20 K 3	5B 8/1 C 20 M 17 Y 16 K 0	2.3PB 7/2 C 27 M 23 Y 20 K 3
3GY 8/2 C 17 M 16 Y 28 K 0	6GY 6/3 C 24 M 20 Y 33 K 15	6Y 8.5/1 C 0 M 0 Y 0 K 42	3Y 8/1.5 C 27 M 23 Y 20 K 3
7GY 8/2 C 24 M 19 Y 19 K 0	9GY 6/2.5 C 27 M 20 Y 30 K 19	2.3PB 7/2 C 27 M 23 Y 20 K 3	2.3PB 7/2 C 0 M 0 Y 0 K 42
N6 C 0 M 0 Y 0 K 42			

■ 강조색 (Y, GY, PB, B계열)

7.5Y 2/2 C 21 M 19 Y 28 K 4	2.5PB 2/4 C 38 M 29 Y 19 K 44	1.25PB 2/2 C 28 M 24 Y 19 K 49	2.5B 2/2 C 28 M 22 Y 19 K 51
10B 2/2 C 29 M 24 Y 19 K 49	5GY 2/1 C 20 M 19 Y 22 K 54	3.75GY 2/2 C 21 M 19 Y 25 K 54	10BG 2/2 C 28 M 21 Y 19 K 52
2.5PB 4/6 C 48 M 33 Y 20 K 21	2.5PB 6/8 C 56 M 35 Y 17 K 0	2.5PB 8/6 C 31 M 16 Y 2 K 0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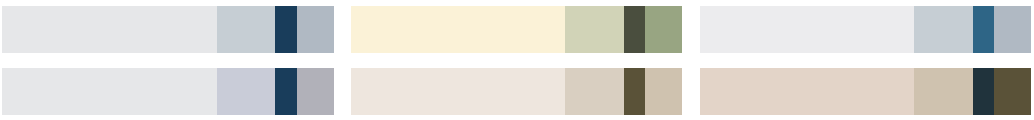

언양읍성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향상 및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주변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공통	①, ②	상업, 숙박시설 공동주택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 및 준주거용지	①	가설건축물	
일반상업용지	②	단독 및 점포주택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상업, 숙박시설 건축물 (구역 ①, ② : 공통)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구역별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수 (문화재청 고시 제2015-40호) -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상 높이의 건축물 건립 시 문화재 영향검토에 따라 문화재청 심의 필수 - 언양읍성과 연접한 가로(읍성로, 서문길, 동문길, 남문길)의 역사전통 이미지 조성을 위해 주진입로에 면하여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식재 및 개방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하고 변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 - 주차장 계획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 계획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가 필요할 시 0.6m 이하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또는 목재, 석재, 돌담, 꽃담, 생울타리 등 한국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형태 계획 -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실외기 설치 시 외부에서 노출괴지 않도록 건축물의 측배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옥상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가림막, 지붕 등으로 차폐

옥외광고물	
통합	- 언양읍성의 전통성을 표현한 색채 사용 및 최대 3색의 배색으로 표현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참조 - 간판계획시 전통적인 이미지의 소재, 색상, 서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고광택, 반사소재, 원색 사용 금지 - 판류형 간판을 배재하고 입체형, 문자형 간판을 설치 - 간판의 면적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1/3 이내,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적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규모 및 위치 등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가로폭이 해당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적용 입체형 간판의 글자폭은 60cm 이하로 표기
세로형 간판	가로폭 80cm(게시틀 접합부 포함)이내로 주변 건축물의 부착위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설치
돌출 간판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설치 금지

야간경관

통합

- 역사전통지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은은하고 온화한 조명색을 사용하고 광원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야광, 네온 등의 광원 연출 금지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3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1	USC-03	USC-47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Y 9.5/2 C 1 M 4 Y 17 K 0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5YR 8.5/2 C 9 M 17 Y 23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N9 C 0 M 0 Y 0 K 10	N9.25 C 0 M 0 Y 0 K 8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N계열)

8.4Y 6.5/1 C 20 M 21 Y 28 K 11	10YR 7/1 C 20 M 23 Y 27 K 4	1.25YR 7/2 C 20 M 28 Y 31 K 0	3.8GY 7.5/2 C 20 M 20 Y 30 K 1
5GY 7/2 C 21 M 20 Y 30 K 6	3.5YR 7/2 C 20 M 28 Y 32 K 0	N7 C 0 M 0 Y 0 K 32	3Y 7/1.5 C 20 M 23 Y 30 K 8
5Y 6/1 C 20 M 21 Y 26 K 20	6Y 8/1 C 19 M 21 Y 27 K 0	8GY 6.5/1.5 C 24 M 20 Y 27 K 15	8GY 8.5/1 C 18 M 14 Y 20 K 0
5YR 6.5/ 2 C 20 M 28 Y 33 K 10			

■ 강조색 (Y, YR, GY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GY 3/2 C 23 M 19 Y 25 K 44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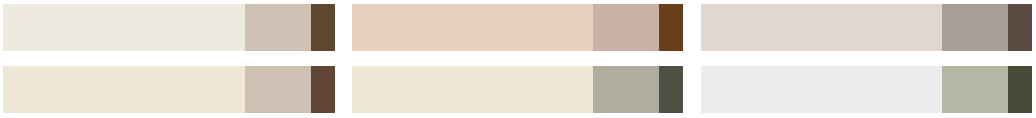

| 가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용지)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문화재 고유 가치 보전을 위해 언양읍성 연접 건축물의 지붕, 입면은 전통적 색채 사용 - 언양읍성과 연접한 건축물의 담장을 조성할 경우 지나친 높이의 담장 형성 지양 및 꽃담, 생울타리 등 한국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권장

오픈스페이스	
통합	- 보도 패턴 및 재질을 통일하며 읍성로, 서문길, 동문길, 남문길의 보행로 연계 - 언양읍성 인근 도로 및 보행로에 미관을 향상시키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식재

옥외광고물	
통합	- 언양읍성 외곽부터 20m이내의 상업시설은 광고물 전면 조명 설치를 금지하며 문자나 도형 등 부분적 요소에만 사용

공공시설물	
통합	-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성을 위해 고광택, 고채도 등의 색채가 적용된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

야간경관	
통합	- 언양읍성 일대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 수립 - 경관 부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 색채 및 산만한 움직임 등이 있는 조명 사용 지양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3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1	USC-03	USC-47	
7.6Y 9.3/0.7 C3M4Y8K0	7Y 8.7/0.6 C9M10Y14K0	0.7Y 7/1.3 C20M24Y29K3	5YR 8.5/2 C9M17Y23 K0
8.1Y 9.8/2.2 C0M0Y13K0	7.5Y 9.2/1.1 C3M5Y12K0	1.2Y 7.5/1.8 C18M23Y31K0	5Y 9.5/2 C1M4Y17K0
7.1Y 8.8/0.2 C9M9Y10K0	6.5Y 8.2/0.1 C15M15Y16K0	0.2Y 6.5/0.8 C20M22Y25K0	5Y 5.2/2 C20M23Y32K21
N9.25 C0M0Y0K8	N9 C0M0Y0K10	N8 C0M0Y0K20	

■ 보조색(Y, YR, GY, N계열)

8.4Y 6.5/1 C 20 M 21 Y 28 K 11	10YR 7/1 C 20 M 23 Y 27 K 4	1.25YR 7/2 C 20 M 28 Y 31 K 0	3.8GY 7.5/2 C 20 M 20 Y 30 K 1
5GY 7/2 C 21 M 20 Y 30 K 6	3.5YR 7/2 C 20 M 28 Y 32 K 0	N7 C 0 M 0 Y 0 K 32	3Y 7/1.5 C 20 M 23 Y 30 K 8
5Y 6/1 C 20 M 21 Y 26 K 20	6Y 8/1 C 19 M 21 Y 27 K 0	8GY 6.5/1.5 C 24 M 20 Y 27 K 15	8GY 8.5/1 C 18 M 14 Y 20 K 0
5YR 6.5/ 2 C 20 M 28 Y 33 K 10			

■ 강조색 (Y, YR, GY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GY 3/2 C 23 M 19 Y 25 K 44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언양읍성과 연접한 가로(읍성로, 서문길, 동문길, 남문길)의 역사전통 이미지 조성을 위해 주 진입로에 면하여 공지를 전면배치하고 조경식재 및 개방 - 주차장 계획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녹색 주차장(투수포장, 잔디블럭 등) 계획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조성
형태 및 외관	- 상업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근 건축물과 지나치게 대비되거나 조화롭지 않은 외장재 사용 지양 - 건축물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경사지붕의 경사는 3/10 이상 되도록 설치 - 경사지붕을 이용한 지붕 속 다락을 설치가 가능하되,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경사지붕에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 - 언양읍성과 연접한 건축물의 지붕, 입면 등 계획시 한국전통소재 및 형태적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 언양읍성과 연접한 건축물의 경계부 담장 조성이 필요한 경우 언양읍성의 담장 높이를 고려하여 기단 높이를 계획하고 돌다, 꽃담, 생울타리 등 한국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형태로 계획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참조 - 간판계획시 전통적인 이미지의 소재, 색상, 서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고광택, 반사소재, 원색 사용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 설치 금지 - 판류형 간판, 입간판, 옥상간판 사용을 금지하며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 - 가로형 광고물 설치 시 입체형 간판의 글자폭은 60cm 이하로 설정 - 가로형 옥외광고물 설치 시 층간 벽면 폭의 80%이내로 표기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역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을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3.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3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5YR 8.5/2 C 9 M 17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 (Y, YR, GY계열)

8.4Y 6.5/1 C 20 M 21 Y 28 K 11	10YR 7/1 C 20 M 23 Y 27 K 4	1.25YR 7/2 C 20 M 28 Y 31 K 0	3.8GY 7.5/2 C 20 M 20 Y 30 K 1
5GY 7/2 C 21 M 20 Y 30 K 6	3.5YR 7/2 C 20 M 28 Y 32 K 0	N7 C 0 M 0 Y 0 K 32	3Y 7/1.5 C 20 M 23 Y 30 K 8
5Y 6/1 C 20 M 21 Y 26 K 20	6Y 8/1 C 19 M 21 Y 27 K 0	8GY 6.5/1.5 C 24 M 20 Y 27 K 15	8GY 8.5/1 C 18 M 14 Y 20 K 0
5YR 6.5/ 2 C 20 M 28 Y 33 K 10			

■ 강조색 (Y, YR, GY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GY 3/2 C 23 M 19 Y 25 K 44
7.5GY 5/4 C 28 M 20 Y 34 K 24	10YR 7/4 C 17 M 29 Y 44 K 0	1.25YR 5/6 C 20 M 42 Y 52 K 9	

■ 4색 배색안

KTX 울산역 역세권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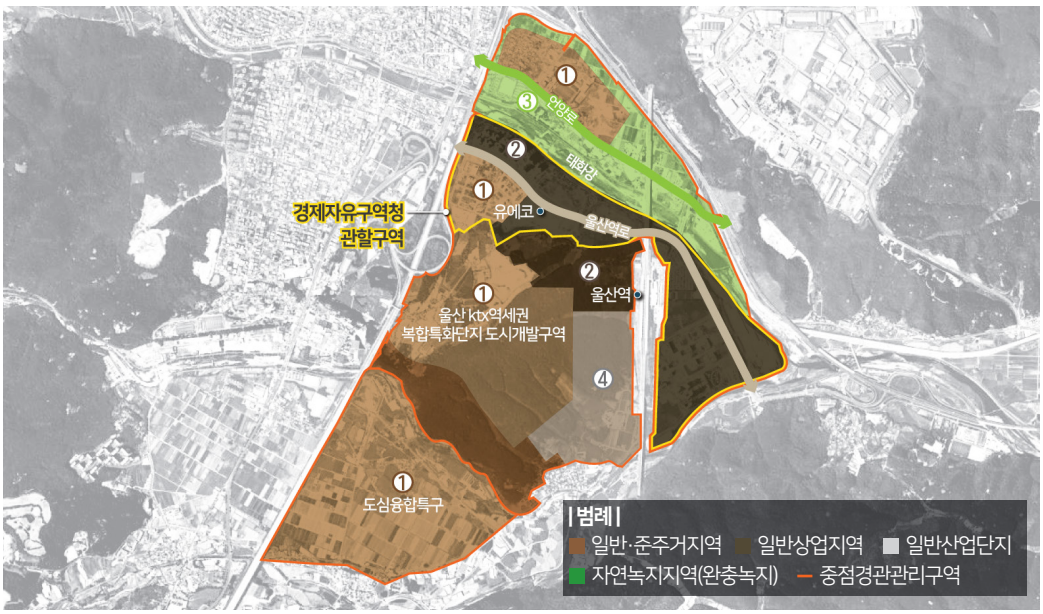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울산광역시의 인상적인 관문지역 이미지 연출 및 태화강변 원도심, 신도심정주경관 격차 완화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①	단독 및 점포주택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상업지역	②	관광숙박시설 문화교육시설 상업시설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③	단독 및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일반산업지역	④	산업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 건축경관, 도로경관 정돈을 위해 단독주택 건축물 신축 시 전면도로에서 1m정도 이격 배치 - 단독주택 전면공지,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한 정원, 주차장은 전면 도로변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현재 조성완료된 단독주택과 조화를 위해 지붕의 형태는 박공지붕, 경사지붕 사용 -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및 복합특화단지도시개발 고층건축물로 인한 인공경관 완화를 위해 건축물 측벽 녹화 권장 - 점포주택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점포주택 내 건축물은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단독주택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평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활기찬 신도심 정주경관 연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KTX복합특화단지 내 공원에 벽천, 분수 등 수경시설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의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미래지향적 도시 연출을 위해 울산역,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에 스마트시설물 통합 설치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 사용 - 주거지역 건축물 전면 조명 설치는 지양하며 가로변 야간경관 형성 시 가급적 온화한 색상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3.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5YR 8.5/2 C 9 M 17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Y, YR, GY, PB, B, N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YR 2/2 C 19 M 26 Y 30 K 49
7.5YR 5/2 C 20 M 27 Y 32 K 20	5GY 6/4 C 24 M 20 Y 38 K 15	2.5Y 7/6 C 18 M 29 Y 55 K 0	

■ 4색 배색안

| 상업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 신도심에서 조망되는 태화강변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울산역로에 연접한 건축물은 도로지적 기준 직각배치
형태 및 외관	-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및 복합특화단지도시개발 고층건축물로 인한 인공경관 완화를 위해 건축물 측벽 녹화 - 신도심의 특색있는 미래형 신도심 이미지 연출을 위해 주요거점과 조화되는 입면 분절 디자인 적용 - 건축물 1층 전면부 벽면은 6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설치

오픈스페이스	
통합	- 활기찬 신도심 정주경관 연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KTX복합특화단지 내 공원에 벽천, 분수 등 수경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미래지향적 도시 연출을 위해 울산역,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에 스마트시설물 통합 설치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계열)

USC-01	USC-03	USC-47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Y 5.2/2 C 20 M 23 Y 32 K 21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Y, YR, GY, N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YR 2/2 C 19 M 26 Y 30 K 49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 건축경관, 도로경관 정돈을 위해 단독주택 건축물 신축 시 전면도로에서 1m정도 이격 배치 - 단독주택 전면공지,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한 정원, 주차장은 전면 도로변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울주군 관문지역의 품격 유지를 위해 컨테이너형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사용 지양 - 점포주택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점포주택 내 건축물은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 단독주택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평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의 설치 금지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 주거지역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지양하며 가로변 야간경관 형성 시 가급적 온화한 색상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3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5YR 8.5/2 C 9 M 17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Y, YR, GY, PB, B, N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7.5YR 2/2 C 19 M 26 Y 30 K 49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4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 건축경관, 도로경관 정돈을 위해 단독주택 건축물 신축 시 전면도로에서 1m정도 이격 배치 - 단독주택 전면공지,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한 정원, 주차장은 전면 도로변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울주군 관문지역의 품격 유지를 위해 컨테이너형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사용 지양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도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를 20cm 이내로 설정(단,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권장

색채

[명도 및 채도범위]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Y, YR, GY, N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5YR 2/2
C 19 M 27 Y 30 K 49

8.75Y 2/2
C 19 M 21 Y 27 K 53

5GY 2/1
C 20 M 19 Y 22 K 54

7.5YR 2/2
C 19 M 26 Y 30 K 49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3색 배색안

| 공공시설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권장 - 건축경관, 도로경관 정돈을 위해 단독주택 건축 시 전면도로에서 1m정도 이격배치 권장 - 단독주택 전면공지,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한 정원, 주차장은 전면 도로변에 배치 권장
형태 및 외관	- 울주군 관문지역의 품격 유지를 위해 컨테이너형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사용 지양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보도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 20cm 이내 지정 - 건축물 저층부는 이웃한 건물과 접하는 외벽선의 일치와 유사한 마감재 및 색채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및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 건축물 전면의 조명은 금하며, 지붕의 실루엣이나 처마 부분에 투광기를 이용하여 도시 전면의 스카이라인 연출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1	USC-03	USC-47	USC-48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5Y 6.7/3.5 C 20 M 25 Y 42 K 5
8.1Y 9.8/2.2 C 0 M 0 Y 13 K 0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6Y 7.2/4 C 20 M 25 Y 45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5Y 5.2/2 C 20 M 23 Y 32 K 21
5Y 9.5/2 C 1 M 4 Y 17 K 0	5YR 8.5/2 C 9 M 17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8/1 C 19 M 21 Y 27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8GY 8.5/1 C 18 M 14 Y 20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YR 2/2 C 19 M 26 Y 30 K 49
7.5YR 5/2 C 20 M 27 Y 32 K 20	5GY 6/4 C 24 M 20 Y 38 K 15	2.5Y 7/6 C 18 M 29 Y 55 K 0	

■ 4색 배색안

| 산업시설 (구역 ④ : 일반산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울산역 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 준용
형태 및 외관	- 울주군 관문지역의 품격 유지를 위해 컨테이너형건축물, 샌드위치 판넬 사용 지양

오픈스페이스	
통합	- 산업단지 내 삭막한 이미지 완화를 위해 공개공지, 전면공지, 가로변녹지 및 포켓파크에 차폐수목 식재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신규 산업단지 내 공원조성 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활용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이상)	저채도 (2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N 계열)

USC-01	USC-03	USC-47	
7.6Y 9.3/0.7 C 3 M 4 Y 8 K 0	7Y 8.7/0.6 C 9 M 10 Y 14 K 0	0.7Y 7/1.3 C 20 M 24 Y 29 K 3	5Y 5.2/2 C 20 M 23 Y 32 K 21
7.5Y 9.2/1.1 C 3 M 5 Y 12 K 0	1.2Y 7.5/1.8 C 18 M 23 Y 31 K 0	7.1Y 8.8/0.2 C 9 M 9 Y 10 K 0	6.5Y 8.2/0.1 C 15 M 15 Y 16 K 0
0.2Y 6.5/0.8 C 20 M 22 Y 25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N7 C 0 M 0 Y 0 K 32	1Y 6/1.5 C 20 M 24 Y 30 K 13
5GY 5.5/2 C 22 M 20 Y 28 K 21	5Y 8/1 C 19 M 21 Y 27 K 0	1GY 8/1.5 C 20 M 20 Y 29 K 0	8GY 8.5/1 C 18 M 14 Y 20 K 0
7PB 7.5/2 C 25 M 24 Y 20 K 2	1YR 6.5/1.5 C 20 M 26 Y 28 K 11	8YR 6.5/ 1.5 C 20 M 25 Y 30 K 12	

■ 강조색 (Y, YR, GY 계열)

5YR 4/1
C 19 M 23 Y 25 K 51

1.25Y 3/2
C 19 M 25 Y 31 K 41

6.25Y 3/2
C 19 M 22 Y 30 K 43

5GY 3/2
C 21 M 19 Y 28 K 45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3색 배색안

구영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울주군 내 가장 도시적인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구영로 도시가로변 상업시설 및 주거지 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상업용지	①	일반상업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 및 준주거용지	②	공동주택 단독 및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일반상업시설 (구역 ① :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의 폭(1m) 이상으로 후퇴하고 전면공지 2m 이상 확보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구영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2/3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 건축물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변을 향하도록 배치 - 차량진출입구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보차혼용도로에 면한 1층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으로 계획하고 보차혼용도로나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 - 담장 설치 필요할 시 0.6m 이하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만 설치 가능 - 보차혼용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높이는 보차혼용도로의 바닥마감과 높이차를 15cm 이내로 설정 - 옥상 및 지붕위에 구조물, 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건너편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높이 0.8~1.5m의 파라펫 등으로 차폐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도심지 경관 연출 - 하천과 면하는 건축물 간 이격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그린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옥외광고물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 1업소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제작 실명제를 실시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기주늘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구영로 연접한 상업시설에는 공공시설물과 결합한 간접조명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연출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은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6이상)	저채도 (2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R, GY, PB, N계열)

10R 6/2 C 20 M 28 Y 30 K 10	5YR 6/2 C 20 M 28 Y 32 K 10	10YR 7/1 C 20 M 23 Y 27 K 4	5Y 6/1 C 20 M 22 Y 26 K 15
7.5Y 7/2 C 20 M 22 Y 32 K 5	5PB 7/1 C 22 M 22 Y 20 K 5	N6 C 0 M 0 Y 0 K 42	1R 7/2 C 20 M 27 Y 27 K 6
3Y 6/2 C 20 M 24 Y 33 K 18			

■ 강조색 (Y, GY, PB, B, BG 계열)

5YR 2/1 C 19 M 23 Y 25 K 51	10YR 2/1 C 19 M 22 Y 25 K 52	10Y 2/2 C 19 M 20 Y 26 K 53	7.5YR 2/2 C 19 M 26 Y 30 K 49
2.5YR 2/4 C 19 M 23 Y 25 K 51	6.25PB 2/2 C 28 M 25 Y 19 K 49	2.5PB 2/4 C 38 M 29 Y 19 K 44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점포주택의 겨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하고 포장재는 I.L.P블럭 등을 사용 - 간선가로(구영로) 변에서의 차량진출입구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형태 및 외관	- 1층부에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여 위치 - 담장 설치 필요 시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일 경우에만 설치가능 - 건축물의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경사는 3/10 이상~7/10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경사지붕을 이용한 지붕 속 다락을 설치가 가능하되, 창문 등 기타 시설물은 창에 면한 지붕 면적의 1/5을 초과하여 경사지붕에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도심지 경관 연출

옥외광고물	
통합	- 1~2층은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및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2층벽체부)까지 설치하여 도심 경관 품격 증진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의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의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을 참조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역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을 적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4-7이상)	저채도 (4.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R, GY, PB, N계열)

10R 6/2
C 20 M 28 Y 30 K 10

5YR 6/2
C 20 M 28 Y 32 K 10

10YR 7/1
C 20 M 23 Y 27 K 4

5Y 6/1
C 20 M 22 Y 26 K 15

7.5Y 7/2
C 20 M 22 Y 32 K 5

5PB 7/1
C 22 M 22 Y 20 K 5

N6
C 0 M 0 Y 0 K 42

1YR 7/3
C 20 M 32 Y 37 K 1

3Y 6/2
C 20 M 24 Y 33 K 18

1PB 6.5/3
C 33 M 26 Y 20 K 9

9PB 4.5/3
C 28 M 28 Y 19 K 29

1R 7/2
C 20 M 27 Y 27 K 6

6.5R 6.5/3
C 20 M 36 Y 39 K 19

■ 강조색 (Y, GY, PB, B, BG 계열)

5YR 2/1
C 19 M 23 Y 25 K 51

10YR 2/1
C 19 M 22 Y 25 K 52

10Y 2/2
C 19 M 20 Y 26 K 53

7.5YR 2/2
C 19 M 26 Y 30 K 49

2.5YR 2/4
C 19 M 23 Y 25 K 51

6.25PB 2/2
C 28 M 25 Y 19 K 49

2.5PB 2/4
C 38 M 29 Y 19 K 44

7.5B 4/6
C 55 M 24 Y 4 K 0

5Y 7/1
C 25 M 20 Y 32 K 15

5YR 5/4
C 20 M 46 Y 70 K 21

7.5GY 6/6
C 51 M 20 Y 85 K 5

■ 4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배치 - 간선가로(구영로) 변에서의 차량진출입구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도로 교차로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구 배치)
형태 및 외관	- 1층부 천막,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유사 색상 유지 - 담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0.6m 높이의 식수대나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일 경우에만 설치가능 - 가급적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 일치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도심지 경관 연출

옥외광고물	
통합	- 1~2층은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및 지상~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2층벽체부) 설치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옥외광고물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참조 - 1업소 1개 간판 설치 원칙 - 옥외광고물 설치제작 실명제 실시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기주늘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고광택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6이상)	저채도 (2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R, GY, PB, N계열)

10R 6/2 C 20 M 28 Y 30 K 10	5YR 6/2 C 20 M 28 Y 32 K 10	10YR 7/1 C 20 M 23 Y 27 K 4	5Y 6/1 C 20 M 22 Y 26 K 15
7.5Y 7/2 C 20 M 22 Y 32 K 5	5PB 7/1 C 22 M 22 Y 20 K 5	N6 C 0 M 0 Y 0 K 42	1R 7/2 C 20 M 27 Y 27 K 6
3Y 6/2 C 20 M 24 Y 33 K 18			

■ 강조색 (Y, GY, PB, B, BG 계열)

5YR 2/1 C 19 M 23 Y 25 K 51	10YR 2/1 C 19 M 22 Y 25 K 52	10Y 2/2 C 19 M 20 Y 26 K 53	7.5YR 2/2 C 19 M 26 Y 30 K 49
2.5YR 2/4 C 19 M 23 Y 25 K 51	6.25PB 2/2 C 28 M 25 Y 19 K 49		

■ 3색 배색안

남창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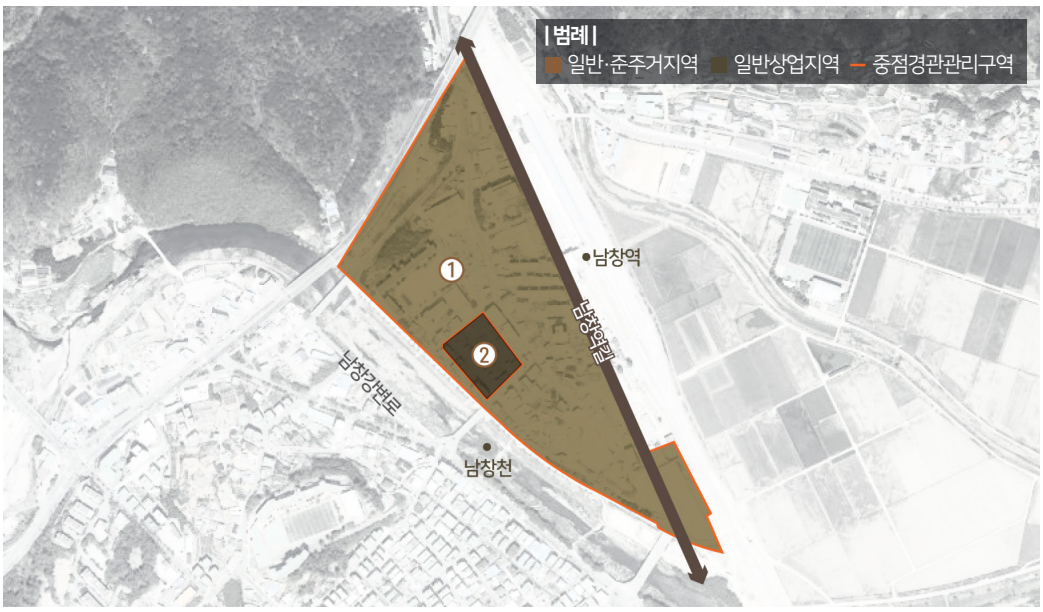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남창역 주변에 형성된 공동주택, 상업건축물 정비 및 옹기종기 전통시장의 특색있는 경관 이미지 확보로 역세권 생활경관 개선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 및 준주거용지	①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상업용지	②	상업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남창역길 도로변 건축물 높이, 건축선 관리로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 - 보행친화적 역세권 경관을 위해 남창역길 내 보행유효폭 1.5m 확보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이내로 계획
형태 및 외관	- 혼란스러운 관문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남창역길변 건축물에 과도하게 분절된 입면 디자인 지양 - 남창역 철도변의 연속적 가로경관을 위해 철도 방음벽, 담장 특화디자인 적용 - 남창역 관문경관 개선을 위해 남창역 주변 3층 이상 건축물 형성 시 입면 디자인 및 패턴 통합관리 - 태양광 설치 시 남창역 도로변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설치 - 정돈된 남창옹기종기 시장경관 연출을 위해 시장 주차장, 상업건축물 지붕색채 통일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남창지역의 경관 특색 강화를 위해 광장에 옹기 디자인패턴, 옹기를 표현하는 갈색 등 상징적 색채 사용 - 남창역사 앞 공터는 외부 방문객들의 휴식,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남창역길의 가로형 옥외광고물은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최대 10m로 설치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남창역길, 남창천변 가로시설물 정비 시 남창옹기마을 홍보를 위해 옹기마을 테마 시설물 통합설치 - 역사 앞 쉼터, 하천변 친수공간에 휴식시설물 설치 시 옹기마을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재료(목재, 도자기 등)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정주공간과 연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가로변 야간경관은 간접조명, 저채도의 은은한 조명 - 남창역길의 연속적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색채 및 조도 통일화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 (Y, YR, 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 2/1
C 19 M 21 Y 24 K 53

5GY 6/6
C 26 M 20 Y 48 K 14

7.5YR 5/2
C 20 M 27 Y 32 K 20

10R 9/1
C 4 M 8 Y 9 K 0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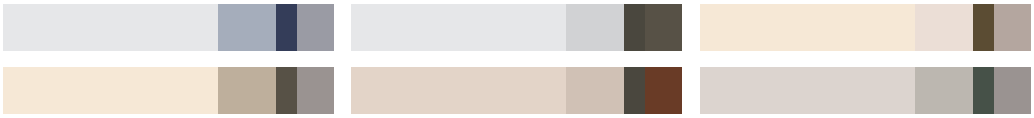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용지)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남창역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지 중심에는 중고층 공동주택을, 주변부에는 저층 공동주택 배치 - 남창역 주변 공동주택 건축물 배치 시 바람길 및 보행녹도 최대한 확보 - 남창역길 도로변 건축물 높이, 건축선 관리로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 - 남창역 주변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 - 보행친화적 역세권 경관을 위해 남창역길 내 보행유효폭 1.5m 확 - 지상 주차장은 남창역 주변 부지와 인접 도로 등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 저층부 상가 조성 시 남창역과의 다채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남창역 철도변의 연속적 가로경관을 위해 철도 방음벽, 담장 특화디자인 적용 - 남창역 관문경관 개선을 위해 남창역 주변 3층 이상 건축물 형성 시 입면 디자인 및 패턴 통합관리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름 - 1층 간판 설치 시 남창역길 인접 시설과 유사한 형식으로 동일 선상에 배치 - 남창역길의 가로형 옥외광고물은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최대 10m로 설치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공공시설물	
통합	-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설치 시 자연재료로 차폐하거나 남창역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조성

야간경관

통합

- 남창역 부근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정주공간과 연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가로변 야간경관은 간접조명, 저채도의 은은한 조명 계획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 (Y, YR, 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 2/1 C 19 M 21 Y 24 K 53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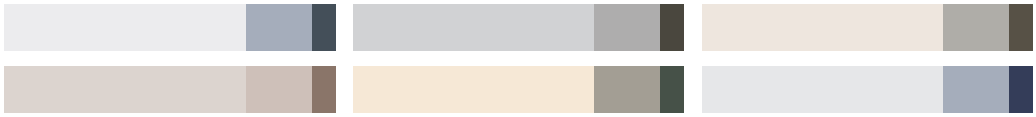

| 상업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외부 지상주차장 계획 시 건축부지의 배후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남창역 부근 주요 진입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공성 저감을 위해 식재차폐
형태 및 외관	- 정돈된 남창옹기종기 시장경관 연출을 위해 시장 주차장, 상업건축물 지붕색채 통일화 - 남창강변로에서 조망되는 경관관리를 위해 남창천변 건축물 입면에는 유사 계열의 색채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남창역길의 가로형 옥외광고물은 당해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최대 10m로 설치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남창역길, 남창천변 가로시설물 정비 시 남창옹기마을 홍보를 위해 옹기마을 테마시설물 통합 설치 - 역사 앞 쉼터, 하천변 친수공간에 휴식시설물 설치 시 옹기마을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재료(목재, 도자기 등)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며, 광고조명 조광기는 추가 설치 - 정주공간과 연접해 있는 지역인 만큼 가로변 야간경관은 간접조명, 저채도의 은은한 조명 계획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N9.25 C 0 M 0 Y 0 K 8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N8 C 0 M 0 Y 0 K 2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 C 0 M 0 Y 0 K 1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R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 2/1 C 19 M 21 Y 24 K 53	7.5YR 5/2 C 20 M 27 Y 32 K 20	10R 9/1 C 4 M 8 Y 9 K 0

■ 3색 배색안

덕하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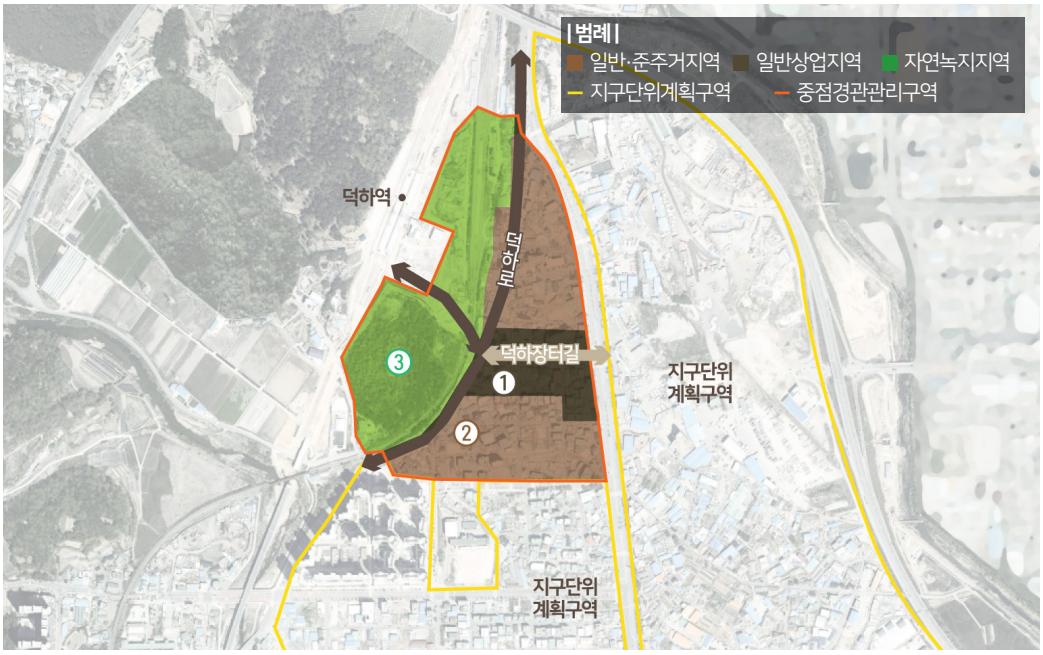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동해남부선 관문경관 개선 및 역세권 전통시장 정돈을 통해 정취가 느껴지는 덕하역 상업가로경관 창출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상업지역	①	상업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②	단독 및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지역	③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상업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주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입면의 규모 고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 덕하로 저층상업건축물 내 어닝 및 천막 설치 시 주변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 - 정취있는 저층상업거리 스카이라인 정돈을 위해 덕하장터길, 덕하로 상업건축물 고도 관리
형태 및 외관	- 신규 상업건축물 형성 시 정취있는 덕하장터경관을 저해하는 건축입면 소재 사용 지양 (예시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철골구조 노출 등) - 옥상부 기계실, 물탱크로 인해 혼재된 경관 개선을 위해 통일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통합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덕하역, 덕하로 진입부 가각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덕하역에서 조망되는 상업거리의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덕하로, 덕하장터길에는 건축면을 차폐하는 현수막, 부착형 광고물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덕하로 가로시설물 설치 시 지나치게 눈에 뛰거나 주변과 부조화를 띠는 소재사용 지양 - 덕하장터길 진입경관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고채도 사용 지양

야간경관	
통합	- 덕하장터의 친숙한 경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업건축물 1층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 사용 지양 - 주변 저층주거지와의 조화를 위해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권장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3M6Y8K0	10YR 8/1 C14M18Y22K0	8YR 8.7/1 C7M11Y14K0	0.1Y 8.7/0.1 C10M10Y11K0
0.6Y 9.7/1 C0M1Y5K0	10YR 8.5/1.5 C8M13Y19K0	8.5YR 9.2/1.5 C0M6Y12K0	N9.25 C0M0Y0K8
N9 C0M0Y0K10	N8 C0M0Y0K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7.5GY 6/2 C 24 M 20 Y 28 K 15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 덕하로 저층상업건축물 내 어닝 및 천막 설치 시 주변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 - 정취있는 저층상업거리 스카이라인 정돈을 위해 덕하장터길, 덕하로 상업건축물 고도 관리 - 우수홈통, 가스배관, 실외기 등 설비시설은 건축물 배면 등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옥상부 기계실, 물탱크로 인해 혼재된 경관 개선을 위해 통일된 디자인의 차폐시설 통합적용 - 덕하로, 덕하장터길의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위해 지붕, 건축물 입면 색채 통일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덕하역, 덕하로 진입부 가각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 도시 진입관문경관 이미지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정비 시 잔디블럭 일부활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 설치 금지 - 덕하역에서 조망되는 상업거리의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덕하로, 덕하장터길에는 건축면을 차폐하는 현수막, 부착형 광고물 설치 금지

야간경관	
통합	- 덕하장터의 친숙한 경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업건축물 1층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 사용 지양 - 주변 저층주거지와의 조화를 위해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GY 3/4
C 27 M 19 Y 32 K 43

7.5GY 6/2
C 24 M 20 Y 28 K 15

1.25YR 5/4
C 20 M 35 Y 41 K 14

5PB 5/4
C 34 M 29 Y 20 K 16

■ 4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건축물 전면이 덕하로 도로변을 향하도록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 덕하로 저층상업건축물 내 어닝 및 천막 설치 시 주변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 - 정취있는 저층상업거리 스카이라인 정돈을 위해 덕하장터길, 덕하로 상업건축물 고도 관리 - 우수홈통, 가스배관, 실외기 등 설비시설은 건축물 배면 등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개방감있는 가로환경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덕하로, 덕하장터길의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위해 지붕, 건축물 입면 색채 통일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통일감 있는 가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덕하로와 유사한 색채나 재질, 패턴 사용 권장 - 덕하역, 덕하로 진입부 가각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 도시 진입관문경관 이미지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정비 시 잔디블럭 일부활용

옥외광고물	
통합	- 덕하역에서 조망되는 상업거리의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덕하로, 덕하장터길에는 건축면을 차폐하는 현수막, 부착형 광고물 설치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공공시설물	
통합	- 덕하로 가로시설물 설치 시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부조화를 띠는 소재사용 지양

야간경관

통합

- 덕하장터의 친숙한 경관 이미지 관리를 위해 상업건축물 1층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조명 사용 지양
- 주변 저층주거지와의 조화를 위해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권장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1.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9.5YR 7.5/0.5 C 20 M 21 Y 23 K 5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 2/1 C 19 M 21 Y 24 K 53	7.5GY 6/2 C 24 M 20 Y 28 K 15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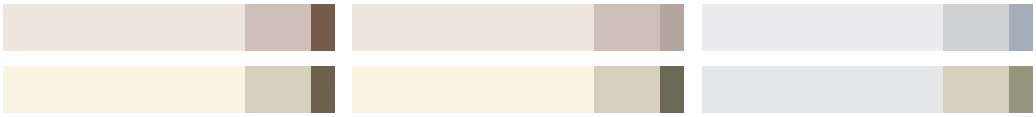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덕하역길 도로변 건축물 높이, 건축선 관리로 정연한 가로경관 연출 - 지상 주차장은 덕하역 주변 부지와 인접 도로 등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형태 및 외관	- 주변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덕하역 주변 주요 장소에서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 외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신규 건축물에 입면분절 디자인 적용 시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적용 - 덕하역 철도변의 연속적 가로경관을 위해 철도 방음벽, 담장 특화디자인 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덕하역, 덕하로 진입부 가각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 공원용지 놀이, 휴식시설물은 주변 건축물과 유사 색채 사용으로 지구 내 경관 혼잡도 최소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자연친화적 휴식경관을 위해 덕화역 주변에 벤치, 파고라 조성 시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1.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N9 C 0 M 0 Y 0 K 1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N9.25 C 0 M 0 Y 0 K 8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PB 5/4 C 34 M 29 Y 20 K 16	7.5GY 3/4 C 27 M 19 Y 32 K 43
7.5GY 6/2 C 24 M 20 Y 28 K 15	1.25YR 5/4 C 20 M 35 Y 41 K 14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③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등으로 녹색주차장 계획
형태 및 외관	- 신규 건축물에 입면분절 디자인 적용 시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적용 - 1층부에 차양막 또는 간판 설치 시 이웃한 건물과 동일한 높이선상에 위치하고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덕하역, 덕하로 진입부 가각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옥외광고물 관리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설계지침>참조 - 1업소 1개 간판 설치 원칙 - 옥외광고물 설치제작 실명제 실시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덕하로 가로시설물 설치 시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부조화를 띠는 소재사용 지양 - 자연친화적 휴식경관을 위해 덕하역 주변에 벤치, 파고라 조성 시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권장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1.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9.5YR 7.5/0.5 C 20 M 21 Y 23 K 5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 2/1 C 19 M 21 Y 24 K 53	7.5GY 6/2 C 24 M 20 Y 28 K 15

■ 3색 배색안

망양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망양역 일원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무분별한 경관 난립 방지를 위한 신규 건축물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상업용지	①	상업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 및 준주거용지	②	단독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신규)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신규)

| 상업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외부 지상주차장 계획 시 건축부지의 배후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망양역 부근 주요 진입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공성 저감을 위해 식재차폐 - 건축물 전면이 도로변을 향하도록 하고 벽면선과 도로선이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 동천1교에서 조망되는 구간의 정돈된 원경 연출을 위해 고층APT 건립 시 통일된 계열의 색조 사용 -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고층 건축물 입면 색채에는 주조색을 70% 이상으로 사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상업용 건축물 앞 주차장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경계부에 띠녹지, 미니 정원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망양2지구 구획정리지구에 옥외광고물 설치 시 2층 이상의 업소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 신도심 내 지정게시대 설치 시 가로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표시하며 배경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선정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망양2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가로변에 EG펜스, 가설시설물 조성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시 색채 통일화 - 가로시설물 통합 정비 시 읍면별 테마색을 사용하여 온양읍 관문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야간경관	
통합	- 동해남부선 하차 승객에게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조명색채 통일화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0.1Y 9.2/0.5
C 3 M 6 Y 8 K 0

USC-04
10YR 8/1
C 14 M 18 Y 22 K 0

USC-38
8YR 8.7/1
C 7 M 11 Y 1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7.5GY 6/2
C 24 M 20 Y 28 K 15

10R 9/1
C 4 M 8 Y 9 K 0

7.5YR 5/2
C 20 M 27 Y 32 K 20

■ 3색 배색안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망양강변길에 연접한 건축물은 수변 방향으로 정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자연친화적 입면 디자인 적용 - 망양강변길에 신규 건축물 형성 시 회야강 조망을 고려하여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 - 망양길에 건축물 형성 시 일관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선 통일화 -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시설 보행 동선과의 연속성 및 조화를 고려하여 도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권장) - 회야강,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위해 건축물 입면에 따뜻한 자연색, 갈색계열 사용 - 회야강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 녹화, 옥상정원 조성

오픈스페이스	
통합	- 지상 주차장 조성 시 부정적 경관 완화를 위해 도로에 면한 주차장 경계부는 차폐녹화 - 점포주택 건축물 앞 주차장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경계부에 띠녹지, 미니 정원 조성 - 회야강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경관을 위해 망양강변길 보행로변에 꽃이나 화관목 연속 식재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름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 설치 금지 - 건축물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 설치 금지 - 간판계획 시 고광택, 반사소재, 원색의 사용 금지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역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저채도의 은은한 조명 사용
- 회야강변의 과도한 야간경관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면부 LED라인 조명 사용 최소화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 2/1
C 19 M 21Y 24 K 53

5GY 6/6
C 26 M 20 Y 48 K 14

7.5YR 5/2
C 20 M 27 Y 32 K 20

10R 9/1
C 4 M 8 Y 9 K 0

■ 4색 배색안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망양강변길에 신규 건축물 형성 시 회야강 조망을 고려하여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 - 망양길에 건축물 형성 시 일관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선 통일화 - 망양역 주변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
형태 및 외관	- 망양역 철도변의 연속적 가로경관을 위해 철도 방음벽, 담장 특화디자인 적용 - 저층부 상가 조성 시 망양역과의 다채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동천1교에서 조망되는 구간의 정돈된 원경 연출을 위해 고층APT 건립 시 통일된 계열의 색조 사용 -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고층 건축물 입면 색채에는 주조색을 70% 이상으로 사용 - 회야강,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위해 건축물 입면에 따뜻한 자연색, 갈색 계열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야간경관	
통합	- 망양역 부근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회야강변의 과도한 야간경관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면부 LED라인 조명 사용 최소화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통합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1.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3M6Y8K0	10YR 8/1 C14M18Y22K0	8YR 8.7/1 C7M11Y14K0	N9.25 C0M0Y0K8
0.6Y 9.7/1 C0M1Y5K0	10YR 8.5/1.5 C8M13Y19K0	8.5YR 9.2/1.5 C0M6Y12K0	N9 C0M0Y0K10
0.1Y 8.7/0.1 C10M10Y11K0	9.5YR 7.5/0.5 C20M22Y23K0	7.5YR 8.2/0.5 C13M16Y17K0	N8 C0M0Y0K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 2/1 C 19 M 21Y 24 K 53
5GY 6/6 C 26 M 20 Y 48 K 14	7.5YR 5/2 C 20 M 27 Y 32 K 20	10R 9/1 C 4 M 8 Y 9 K 0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망양강변길에 연접한 건축물은 수변 방향으로 정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자연친화적 입면 디자인 적용 - 망양길에 건축물 형성 시 일관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선 통일화
형태 및 외관	- 회야강,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위해 건축물 입면에 따뜻한 자연색, 갈색계열 사용 - 회야강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 녹화, 옥상정원 조성

오픈스페이스	
통합	- 상업용 건축물 앞 주차장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경계부에 띠녹지, 미니 정원 조성 - 회야강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경관을 위해 망양강변길 보행로변에 꽃이나 화관목 연속 식재 - 연속성 형성을 위해 바닥 포장은 연접한 보도의 포장재료, 색채, 패턴과 통일화 - 망양역 주변과의 통일감과 질서감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공공시설물	
통합	- 망양2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가로변에 EG펜스, 가설시설물 조성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시, 색채 통일화 - 가로시설물 통합 정비 시 읍면별 테마색을 사용하여 온양읍 관문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강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1층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인접 시설과 유사한 형식으로 동일선상에 배치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야간경관

통합

- 동해남부선 하차 승객에게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조명색채 통일화
- 회야강변의 과도한 야간경관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면부 LED라인 조명 사용 최소화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7이상)	저채도 (1.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5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3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0.1Y 9.2/0.5
C 3 M 6 Y 8 K 0

USC-04
10YR 8/1
C 14 M 18 Y 22 K 0

USC-38
8YR 8.7/1
C 7 M 11 Y 14 K 0

9.5YR 7.5/0.5
C 20 M 21 Y 23 K 5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N8
C 0 M 0 Y 0 K 2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N9
C 0 M 0 Y 0 K 1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7.5YR 5/2 C 20 M 27 Y 32 K 20	10R 9/1 C 4 M 8 Y 9 K 0

■ 3색 배색안

서생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역세권 신도시 개발 시 발생될 주거지 간 격차방지를 위한 서생역 관문지역 경관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①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신규)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신규)

|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이내로 계획 - 동해남부선에서 부감경으로 조망되는 화산발리로의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건축물 건축선 통일화 - 무학길 주거지 내 신축 건축물 형성 시 건축물 전면부에 개방된 정원 및 녹지공간 배치 - 서생역 연접 지역의 쾌적한 경관을 위해 화산발리로에 창고형 건축물 형성 금지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서생역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사용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 차폐형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 발생 시 낮은 돌담, 생울타리, 투시형 펜스 계획 - 무학길의 연속적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담장 색채는 권역, 유형별, 읍면별 색채 가이드라인의 통일된 색조 적용 - 무학길에 주거용 건축물 형성 시 대다수의 기존 저층주택에 사용된 벽돌벽 색채와 조화되는 계열의 색채 적용 - 따뜻하고 아늑한 주거지 경관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입면, 지붕 색채에 푸른계열의 B, PB계열 3% 이내로 사용 - 농경지 경관의 노후된 이미지 완화 및 관문지역 특색 강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형태 디자인 특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서생역 주변과의 통일감과 질서감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 활력있는 주거지경관을 위해 온곡1구 마을회관 인근 공공공간에 녹지 및 계절 식재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은 입체형·문자형 옥외광고물로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제공 - 무학로, 화산발리로 주변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화산발리로 안전펜스 설치 시 고채도의 시설물 사용 지양 및 저채도 색채 시설물 연속 설치 - 온곡1구 마을회관 인근 공공공간, 휴식공간 정비 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체육시설, 편의 시설 확충

야간경관	
통합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무학길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 경관 주목성 강화를 위해 무학길, 화산발리로 교차부 유휴공간 안내사인물, 조형물에 야간조명 통합 조성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0BG 2/2 C 28 M 21 Y 19 K 52
2.5PB 4/6 C 48 M 33 Y 20 K 21	2.5PB 6/8 C 56 M 35 Y 17 K 0	2.5PB 8/6 C 31 M 16 Y 2 K 0	

■ 4색 배색안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동해남부선에서 부감경으로 조망되는 화산발리로의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건축물 건축선 통일화 - 서생역 인접지역 대규모 단지 조성 시 폐쇄감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바람길 조성 및 주변 자연경관으로 통경축 계획 - 화산발리로, 무학로 등의 도로와 인접한 주동은 조망확보 및 개방감 형성을 위해 도로측으로 장방형 배치 지양 -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은 지양하며, 서생역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 - 서생역 부근 저층 주거지역 일조권 고려를 위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권장 및 급격한 층고 변화 지양
형태 및 외관	- 저층부 상가 조성 시 서생역과의 다채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고층 건축물 입면 색채에는 주조색을 70% 이상으로 사용 - 무학길의 연속적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고층 건출물 입면 색채는 권역, 유형별, 읍면별 색채 가이드라인의 통일된 색조 적용 - 따뜻하고 아늑한 주거지 경관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입면, 지붕 색채에 푸른계열의 B, PB계열 3% 이내로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옥외광고물은 입체형·문자형 옥외광고물로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제공 - 무학로, 화산발리로 주변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야간경관

통합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무학길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 경관 주목성 강화를 위해 무학길, 화산발리로 교차부 유휴공간 안내사인물, 조형물에 야간조명 통합 조성
- 서생역 부근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권장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0BG 2/2 C 28 M 21 Y 19 K 52
2.5PB 4/6 C 48 M 33 Y 20 K 21	2.5PB 8/6 C 31 M 16 Y 2 K 0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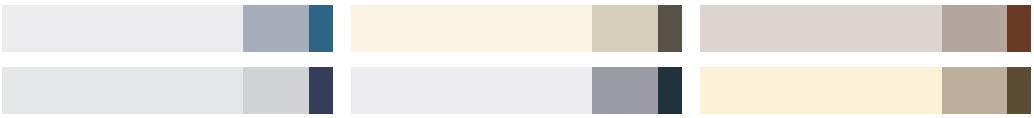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동해남부선에서 부감경으로 조망되는 화산발리로의 정돈된 이미지를 위해 건축물 건축선 통일화 - 무학길 주거지 내 신축 건축물 형성 시 건축물 전면부에 개방된 정원 및 녹지공간 배치 - 서생역 연접 지역의 쾌적한 경관을 위해 화산발리로에 창고형 건축물 형성 금지
형태 및 외관	- 무학길의 연속적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담장 색채는 권역, 유형별, 읍면별 색채 가이드라인의 통일된 색조 적용 - 따뜻하고 아늑한 주거지 경관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입면, 지붕 색채에 푸른계열의 B, PB계열 3% 이내로 사용 - 농경지 경관의 노후된 이미지 완화 및 관문지역 특색 강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형태 디자인 특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화산발리로 공개공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쌈지정원 연출 - 실외기, 환풍구 등 외부시설 노출 시 집약하여 설치하고 가림막 등으로 차폐 (단, 차폐 시에는 각 건축물의 외관과 동일한 재질 사용, 식재 등 조경시설 조성) - 일체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 외부공간과 보도의 포장 디자인이나 패턴 일체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1층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인접 시설과 유사항 형식으로 동일선상 배치 - 옥외광고물은 입체형·문자형 옥외광고물로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제공 - 무학로, 화산발리로 주변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통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화산발리로 안전펜스 설치 시 고채도의 시설물 사용 지양 및 저채도 색채 시설물 연속 설치 - 온곡1구 마을회관 인근 공공공간, 휴식공간 정비 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체육시설, 편의 시설 확충

야간경관

통합

- 경관 주목성 강화를 위해 무학길, 화산발리로 교차부 유휴공간 안내사인물, 조형물에 야간조명 통합 조성
- 주거지역을 향한 광공해 발생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면의 직접적인 광원 노출 지양
- 서생역 연접지역의 활기 있는 경관 유도를 위해 옥외광고물보다는 쇼윈도를 활용한 조명 연출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6.25B 3/6 C 67 M 30 Y 19 K 32	10BG 2/2 C 28 M 21 Y 19 K 52
2.5PB 4/6 C 48 M 33 Y 20 K 21	2.5PB 8/6 C 31 M 16 Y 2 K 0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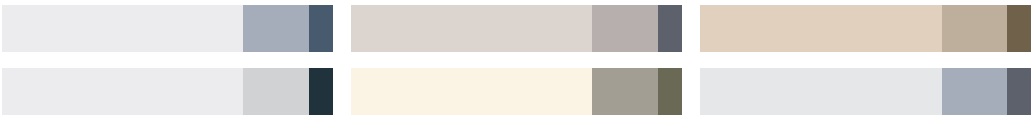

천상 평천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천상천을 중심으로 형성될 예정인 천상 곡천지구의 자연친화적 경관을 위해 주거지 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자연녹지지역	①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②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하천변 단독주택용지변으로 4m 건축 한계선을 두어 보행로, 띠녹지 연속 조성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상 평천 신도심 경관을 위해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천상천 경관이 조망되는 방향으로 주택 전면부 배치 - 천상천으로 열리는 통경축 확보 후 건축물 간 이격공간에 녹지공간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이내로 계획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천상천변의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해 입면부 색채는 3가지 이내의 Y, YR계열의 색채로 통합적용 - 수변의 개방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하천변 건축물 입면에는 보조색, 강조색 사용 최소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 하천과 면하는 건축물 간 이격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그린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준용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 시설의 설치 금지 - 천상천변에는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간판 디자인을 권장하며 금속재질 사용 시 반사체 면적 최소화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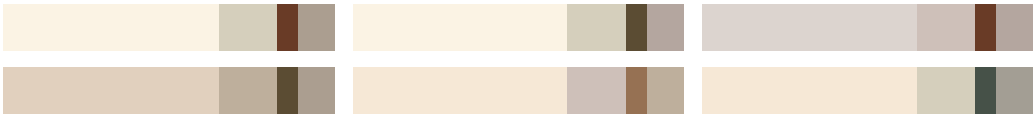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상 평천 신도심 경관을 위해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천상천 경관이 조망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전면부 배치 - 천상천으로 열리는 통경축 확보 후 건축물 간 이격공간에 녹지공간 배치
형태 및 외관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천상천변의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해 입면부 색채는 3가지 이내의 Y, YR계열의 색채로 통합적용 - 수변의 개방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하천변 건축물 입면에는 보조색, 강조색 사용 최소화 - 천상천, 주변 녹지와 조화를 위해 공동주택 조성 시 저층부에는 목재, 점토벽돌, 황토벽돌 등 자연재질 사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 하천과 면하는 건축물 간 이격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그린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천상 평천지구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권장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은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천상천으로 열리는 통경축 확보 후 건축물 간 이격공간에 녹지공간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등을 사용하여 녹색주차장 계획
형태 및 외관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천상천변의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해 입면부 색채는 3가지 이내의 Y, YR계열의 색채로 통합적용 - 수변의 개방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하천변 건축물 입면에는 보조색, 강조색 사용 최소화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 하천과 면하는 건축물 간 이격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그린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천상천변에는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간판 디자인을 권장하며 금속재질 사용 시 반사체 면적 최소화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천상천변 오픈스페이스에는 공공시설물과 결합한 간접조명으로 설치하여 은은한 휴식경관 연출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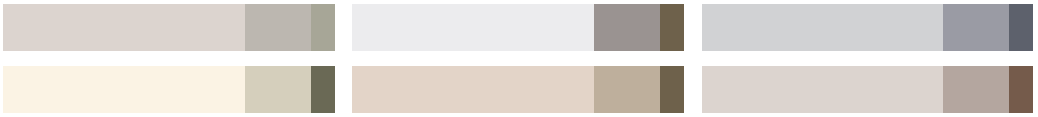

| 단독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단독주택 전면공지,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한 정원, 주차장은 전면 도로변에 배치
형태 및 외관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점포주택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1층 벽면 중 전면도로에 면한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점포주택 내 건축물은 이웃한 건물과 외벽선 및 처마선이 일치하도록 계획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저층부(2층 이하)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및 건축물 벽면 가로폭의 1/3이내로 설치하여 신도심 경관 품격 증진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 연출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 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며 점멸형 연출 금지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에는 간판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 주거지역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지양하며 가로변 야간경관 형성 시 가급적 온화한 색상적용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B 4/6 C 55 M 24 Y 4 K 0
5Y 7/1 C 25 M 20 Y 32 K 15	5YR 5/4 C 20 M 46 Y 70 K 21	7.5GY 6/6 C 51 M 20 Y 85 K 5	

■ 4색 배색안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은 지양하며, 서생역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천상 평천지구 대규모 단지 조성 시 폐쇄감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바람길 조성 및 주변 자연경관으로 통경축 계획
형태 및 외관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저층부 상가 조성 시 다채로운 천상 평천지구 경관형성을 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고층 건축물 입면 색채에는 주조색을 70% 이상으로 사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신도심 경관 품격 증진을 위해 저층부(2층 이하)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및 건축물 벽면 가로폭의 1/3이내로 설치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옥외광고물은 입체형·문자형 옥외광고물로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제공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상가층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천상 평천지구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권장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은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B 4/6 C 55 M 24 Y 4 K 0
5Y 7/1 C 25 M 20 Y 32 K 15	5YR 5/4 C 20 M 46 Y 70 K 21	7.5GY 6/6 C 51 M 20 Y 85 K 5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형태 및 외관	- 입체적 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 굴곡 또는 부분 돌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되 해당 부분에 강조색 사용 지양 - 실외기, 환풍구 등 외부시설 노출 시 집약하여 설치하고 가림막 등으로 차폐 (단, 차폐 시에는 각 건축물의 외관과 동일한 재질 사용, 식재 등 조경시설 조성)

오픈스페이스	
통합	- 일체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 외부공간과 보도의 포장 디자인이나 패턴 일체화 - 공원, 휴식공간에는 계절식재를 조성하여 사계절 활력있는 주거지 경관 연출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저층부(2층 이하)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 및 건축물 벽면 가로폭의 1/3이내로 설치하여 신도심 경관 품격 증진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설비시설물 등의 경관위해요소는 주변 색채와 유사한 색조를 사용한 차폐 가림막으로 정돈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야간경관

통합

- 투광조명을 건물에 조명하는 경우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빛이 장식면의 경계를 벗어나 누광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의 계획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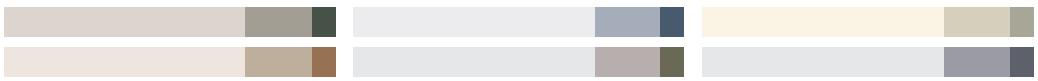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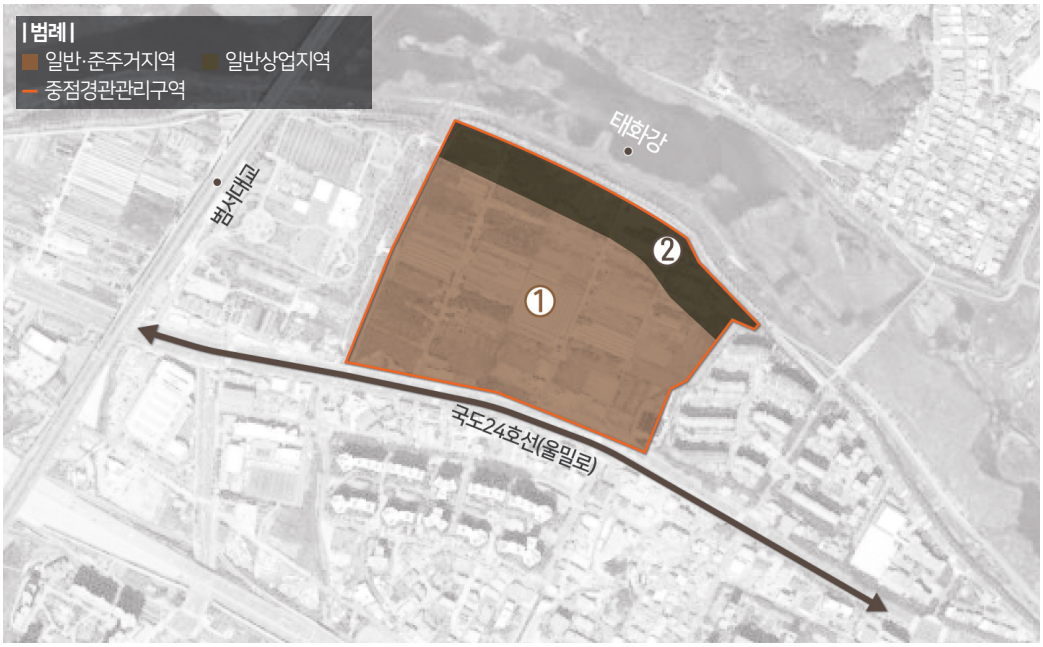

경관관리 방향

- 태화강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상업지역 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①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자연녹지지역	②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운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 국도 24호선변, 태화강변으로 내려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연출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태화강변과의 조화를 위해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사용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점포주택 건축물 앞 주차장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경계부에 띠녹지, 미니 정원 조성 - 국도24호선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 시 계절식재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 태화강 등 원경에서 조망되는 신도심 경관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국도 24호선변에 간판 설치 시 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과 조화되도록 하며 고채도 및 원색 사용 지양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 층에는 간판 설치 금지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가급적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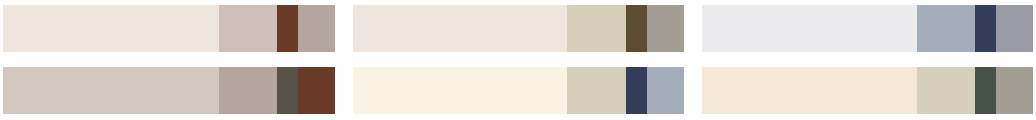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국도 24호선변, 태화강변으로 내려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연출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 가로경관 차폐도 완화를 위해 입면 차폐율이 높은 공동주택 은 입면 분절 디자인 - 공동주택 건축물 입면에 3색을 사용하되 주조색을 80%로 사용 - 공동주택 단지의 변화있는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 입면 보조색, 강조색(전체 면적의 20%미만으로 사용) 사용 시 동별로 면적을 달리 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국도24호선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 시 계절식재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웅촌로 교통섬, 가로변 유휴공간 정비 시 야간경관조명 계획을 함께 수립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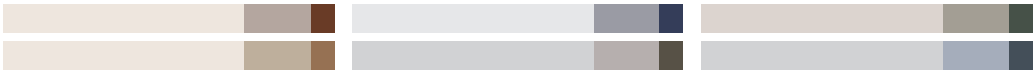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태화강변과의 조화를 위해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사용 - 국도 24호선변, 태화강변으로 내려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연출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 가로경관 차폐도 완화를 위해 입면 차폐율이 높은 공동주택, 의료시설, 공공건축물 입면 분절 디자인 적용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오픈스페이스	
통합	- 국도24호선과 태화강을 연결하는 가로변에 띠녹지 조성 시 계절식재 사용

옥외광고물	
통합	- 태화강 등 원경에서 조망되는 신도심 경관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국도 24호선변에 간판 설치 시 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과 조화되도록 하며 고채도 및 원색 사용 지양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자연친화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자연요소와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신도심의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색채는 3색 이하로 사용 - 1층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인접시설과 유사항 형식으로 동일선상 배치

통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지양하며,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 이내로 계획 - 국도 24호선변, 태화강변으로 내려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연출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 태화강 수변,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입면 분절 시 구간별로 다른 색조 사용 지양 - 차폐형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 발생 시 낮은 돌담, 생울타리, 투시형 펜스 등 조성 - 건축물 외부에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물탱크와 계단실이 경사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오픈스페이스	
통합	- 울주군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태화강 수변경관 조망공간 조성 - 공원용지 놀이, 휴식시설물은 주변 공동주택, 의료시설 건축물과 유사 색채 사용으로 지구 내 경관 혼잡도 최소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 설치 금지 - 태화강 등 원경에서 조망되는 신도심 경관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 자연친화적 휴식경관을 위해 태화강변 벤치, 파고라 조성 시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역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지양하며 가로변 야간경관 형성 시 가급적 온화한 색상적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다소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보라색 조명은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분사용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4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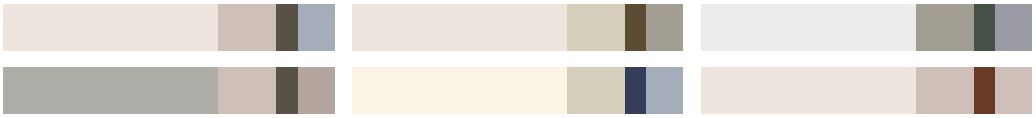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②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국도 24호선변, 태화강변으로 내려갈수록 건축물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입체적 스카이라인 연출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 공원용지와 연접한 공동주택용지에 10m 건축 한계선을 두어 쌈지정원, 녹지공간 배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 태화강 수변,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입면 분절 시 구간별로 다른 색조 사용 지양

오픈스페이스	
통합	- 울주군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태화강 수변경관 조망공간 조성 - 공원용지 놀이, 휴식시설물은 주변 공동주택, 의료시설 건축물과 유사 색채 사용으로 지구 내 경관 혼잡도 최소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표기내용의 색채는 3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고채도 원색은 1개 이내로 최소화 - 주거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명은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방식 적용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 자연친화적 휴식경관을 위해 태화강변 벤치, 파고라 조성 시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야간경관

통합

-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건축물 (구역 ② :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태화강변으로 열린 건축물 배치로 개방적 조망경관 확보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 시 투시형, 생울타리형으로 조성
형태 및 외관	- 신규 건축물에 입면분절 디자인 적용 시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 적용 - 건축물 입면 색채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색채 팔레트, 울주군 활력정주경관권역 주조색 활용 - 태화강 수변,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입면 분절 시 구간별로 다른 색조 사용 지양

오픈스페이스	
통합	- 울주군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태화강 수변경관 조망공간 조성 - 공원용지 놀이, 휴식시설물은 주변 공동주택, 의료시설 건축물과 유사 색채 사용으로 지구 내 경관 혼잡도 최소화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태화강 등 원경에서 조망되는 신도심 경관 정돈을 위해 3층 이하, 벽면 면적의 1/3이내로 설치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가로등, 펜스, 플랜트 박스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 시 울주군시가지경관색채의 보조색, 강조색 사용 - 자연친화적 휴식경관을 위해 태화강변 벤치, 파고라 조성 시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야간경관

통합

- 주거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간판 등의 네온사인 조도 관리
- 광고조명은 조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식조명은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2.5YR 3/2 C 19 M 28 Y 31 K 39	3.75Y 3/2 C 19 M 23 Y 30 K 42	2.5Y 3/2 C 19 M 24 Y 31 K 42	1.25GY 3/2 C 20 M 19 Y 27 K 45
2.5PB 3/2 C 29 M 25 Y 19 K 40	5PB 3/1 C 23 M 22 Y 19 K 42	5YR 5/4 C 20 M 46 Y 70 K 21	5Y 7/1 C 25 M 20 Y 32 K 15

■ 3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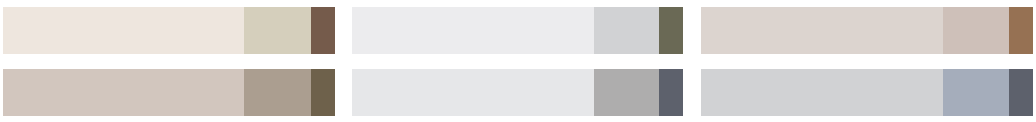

웅촌 곡천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경관관리 방향

- 회야강,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활력있는 웅촌 곡천신도심 연출을 위한 주거지 경관 관리

주요 관리대상

지역지구	구역	용도별 건축물	지침구성
일반 및 준주거지역	①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규모 및 배치 - 형태 및 외관 - 오픈스페이스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야간경관 - 색채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입면 면적의 20%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 단독주택 및 점포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점포주택의 경우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되는 부분은 인접도로와의 단차를 15cm이내로 계획 - 자연과 조화되는 신도심 경관을 위해 화장산 등 주변 산림경관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연출 - 쾌적한 경관을 위해 웅촌길, 새초천길에는 창고형 가설건축물 형성 금지 - 주차장 계획 시 이면배치, 차폐식재 등으로 외부에서 노출을 지양하고 투수성 높은 투수포장, 잔디블럭 사용으로 녹색주차장 조성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 노출 지양 (단, 외부 노출 시에는 차폐시설 설치) - 차폐형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 발생 시 낮은 돌담, 생울타리, 투시형 펜스 계획 - 품격있고 편안한 주거지 분위기 연출을 위해 건축물 입면 주조색은 Y, YR계열로 적용 - 단독주택 건축 시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경사지붕을 적용하고 갈색계열 색채 적용 - 기존 새초천길 건축물 평균 연면적보다 넓은 건축물 형성 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면 분절 - 새초천길의 밝고 활력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는 주조색을 70%이상 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회야강과 연접한 가로변에는 데크형 산책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 회야강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하천 조망형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해당층, 건축의 옥상 및 상단부에 간판이나 광고시설 설치 금지 - 신도심의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색채는 3색 이하로 사용

공공시설물	
통합	- 웅촌길, 새초천길에 생울타리, 담장 설치 시 차폐감 최소화를 위해 높이는 1.0m 이하로 설치 - 곡천지구 주요 가로변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계열 색채로 통일

야간경관	
통합	- 정온한 주거지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의 전면조명 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은은한 보행조명 연속 설치 - 웅촌 곡천신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웅촌로 교통섬, 가로변 유휴공간 정비 시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함께 수립 - 회야강 산책로변 경관 조명은 색온도 3,000k 이하의 조명으로 연출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6.5이상)	저채도 (2.5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USC-39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2.5Y 7/2 C 20 M 24 Y 33 K 3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3Y 7.5/2.5 C 17 M 23 Y 34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2Y 6.5/1.5 C 20 M 24 Y 30 K 8

5Y 9.5/2 C 1 M 4 Y 17 K 0	9.5YR 7.5/0.5 C 20 M 22 Y 23 K 0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N9.25 C 0 M 0 Y 0 K 8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R 5/6 C 20 M 43 Y 48 K 9
1.25YR 5/4 C 20 M 35 Y 41 K 14	1.25YR 6/2 C 20 M 28 Y 31 K 10	10YR 3/4 C 19 M 29 Y 42 K 37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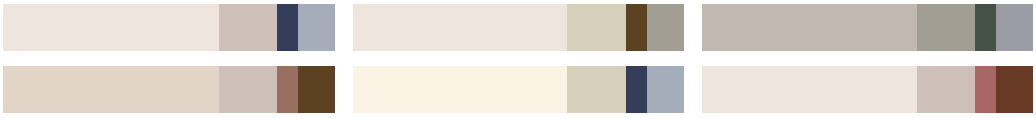

| 공동주택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자연과 조화되는 신도심 경관을 위해 화장산 등 주변 산림경관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연출 -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화장산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지 중심에는 중고층 공동주택을, 주변부에는 저층 공동주택 배치 - 단조롭고 획일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웅촌 곡천지구에 맞는 개성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배치 - 웅촌로 도로와 인접한 주동은 조망 확보 및 개방감 형성을 위해 도로측으로의 장방형 배치 지양
형태 및 외관	- 저층부 상가 조성 시 다채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단지 경계부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나 필요 시 투시형 담장이나 식재를 통해 자연경계 조성 - 일관된 원경을 위해 공동주택 형성 시 활력정주권역 색채 주조색 1색을 선택하고 보조, 강조색은 유사계열로 사용 - 품격있고 편안한 주거지 분위기 연출을 위해 건축물 입면 주조색은 Y, YR계열로 적용 - 새초천길의 밝고 활력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는 주조색을 70%이상 적용

오픈스페이스	
통합	- 회야강과 연접한 가로변에는 데크형 산책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권장 - 회야강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하천 조망형 휴식공간 조성 권장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신도심의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색채는 3색 이하로 사용

공공시설물	
통합	- 웅촌길, 새초천길에 생울타리, 담장 설치 시 차폐감 최소화를 위해 높이는 1m 이하로 설치 - 곡천지구 주요 가로변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계열 색채로 통일

야간경관	
통합	- 웅촌 곡천신도심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의 조명, 움직임이 있는 조명 지양 - 웅촌 곡천신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웅촌로 교통섬, 가로변 유휴공간 정비 시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함께 수립 - 회야강 산책로변 경관 조명은 색온도 3,000k 이하의 조명으로 연출 권장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 주출입부 및 보행로에 조명 설치 시 CPTED를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 아파트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지양
- 조명원과 조명색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 조명 금지)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투광기
조명색	백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 평균조도와 조명시간

구분	조명원 및 조명색
평균조도	50~90 lx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가능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중저채도 (6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6.25PB 2/4 C 33 M 30 Y 19 K 44	8.75B 2/2 C 29 M 23 Y 19 K 50	7.5R 5/6 C 20 M 43 Y 48 K 9
1.25YR 5/4 C 20 M 35 Y 41 K 14	1.25YR 6/2 C 20 M 28 Y 31 K 10	10YR 3/4 C 19 M 29 Y 42 K 37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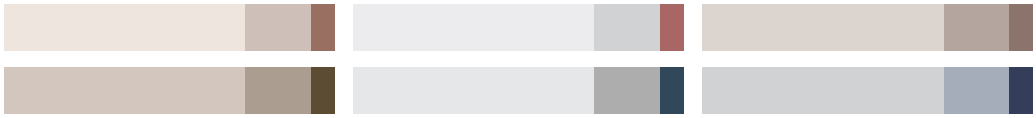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구역 ① : 일반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	
규모 및 배치	- 자연과 조화되는 신도심 경관을 위해 화장산 등 주변 산림경관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연출 - 웅촌길의 연속된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입면의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 - 웅촌길, 새초천길에는 창고형 가설건축물 형성 금지 - 상업가로변 조성 시 개방감을 위해 공지에는 과도한 시설물이나 조경 설치 지양
형태 및 외관	- 기존 새초천길 건축물 평균 연면적보다 넓은 건축물 형성 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면 분절 - 새초천길의 밝고 활력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건축물 입면에는 주조색을 70%이상 적용 - 웅촌로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방감 있는 가로환경 형성 유도를 위해 셔터 설치 시, 투시형 셔터 설치 - 옥탑부에 설치되는 물탱크, 실외기 등 설비시설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고 외부 노출 시, 차폐시설 설치

오픈스페이스	
통합	- 공공건축물 앞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친환경적을 조성하며 경계부는 식재로 구분 - 회야강과 연접한 가로변에는 데크형 산책로를 연속적으로 설치 - 회야강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하천 조망형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통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공용부분(같은 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 자연친화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자연요소와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신도심의 혼재된 경관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색채는 3색 이하로 사용장 - 1층 차양막 및 옥외광고물 설치 시 인접시설과 유사항 형식으로 동일선상 배치

통합

- 형태별 적용범위

구분	허용업소	위치
옥상 간판	설치 금지	
가로형 간판	지하층, 1~2층 입주업소	지상에서 건축물 3층 창문 하단선 (2층 벽체부)까지 설치
세로형 간판	-	건축물 출입구 양측면 중 1개소
돌출 간판	3층 이상 입주업소	건축물 3층 이상의 각층 창문 하단선~상단선 이하
지주형 간판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창고이용광고	-	건축물 1층 창문만 허용
네온광고	-	현행허가 기준을 따르되 적색네온의 표준면적은 전체면적의 1/2 이내

공공시설물

통합

- 광택이 있는 펜스로 인한 인공경관 형성 방지를 위해 생울타리, 담쟁이를 활용한 친환경 펜스 사용
- 웅촌길, 새초천길에 생울타리, 담장 설치 시 차폐감 최소화를 위해 높이는 1m 이하로 설치
- 곡천지구 주요 가로변 가로시설물의 색채는 주변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계열 색채로 통일

야간경관

통합

- 웅촌 곡천신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웅촌로 교통섬, 가로변 유휴공간 정비 시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함께 수립
- 회야강 산책로변 경관 조명은 색온도 3000k 이하의 조명으로 연출
- 장식조명 계획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식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건축물 입면 4면 100% 기준

구분	명도	채도	면적
주조색	고명도 (8이상)	저채도 (2이하)	70% 이상
보조색	중고명도 (5.5이상)	중저채도 (6이하)	30% 미만
강조색	저명도 (2이상) 보조색도 강조색으로 사용가능함	저채도 (2이하)	10% 미만

[권장색채팔레트 / 배색사례]

- 제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지붕색은 보조색과 유사한 색채를 선정하되 명도와 채도 범위 준수
- 권장색채팔레트에 명시된 색채를 사용하며, 권장색채팔레트는 아래 표를 참고
- 주조색은 특정경관계획의 경관 권역별 색채, 보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강조색은 경관 유형별 색채 및 읍면별 경관 색채 준용

■ 주조색(Y, YR, N 계열)

USC-02	USC-04	USC-38	
0.1Y 9.2/0.5 C 3 M 6 Y 8 K 0	10YR 8/1 C 14 M 18 Y 22 K 0	8YR 8.7/1 C 7 M 11 Y 14 K 0	7.5YR 8.2/0.5 C 13 M 16 Y 17 K 0
0.6Y 9.7/1 C 0 M 1 Y 5 K 0	10YR 8.5/1.5 C 8 M 13 Y 19 K 0	8.5YR 9.2/1.5 C 0 M 6 Y 12 K 0	5Y 9.5/2 C 1 M 4 Y 17 K 0
0.1Y 8.7/0.1 C 10 M 10 Y 11 K 0	N9.25 C 0 M 0 Y 0 K 8	N9 C 0 M 0 Y 0 K 10	N8 C 0 M 0 Y 0 K 20

■ 보조색(Y, YR, GY, PB, N 계열)

8Y 6.5/0.3 C 20 M 20 Y 22 K 11	6YR 5.5/0.5 C 20 M 22 Y 23 K 20	4.2PB 6.5/2.5 C 28 M 25 Y 20 K 6	1Y 6/1.5 C 20 M 24 Y 30 K 13
2PB 5.5/5 C 42 M 31 Y 20 K 9	5GY 5.5/2 C 22 M 20 Y 28 K 21	N7 C 0 M 0 Y 0 K 32	5Y 7/2 C 20 M 23 Y 33 K 8

8YR 8/0.5 C 19 M 21 Y 23 K 0	3YR 6.5/1 C 20 M 24 Y 26 K 13	3GY 8.5/ 1.5 C 16 M 14 Y 25 K 0	8GY 7.5/1 C 23 M 20 Y 25 K 5	7PB 7/1 C 22 M 22 Y 20 K 9

■ 강조색(Y, YR, GY, PB, B 계열)

1.25YR 2/2 C 19 M 27 Y 29 K 48	5Y 2/1 C 19 M 21 Y 24 K 53	3.75Y 2/2 C 19 M 23 Y 29 K 51	7.5GY 2/2 C 22 M 19 Y 24 K 53
5B 2/1 C 24 M 21 Y 19 K 52	8.75B 2/2 C 29 M 23 Y 19 K 50	1.25YR 6/2 C 20 M 28 Y 31 K 10	

■ 4색 배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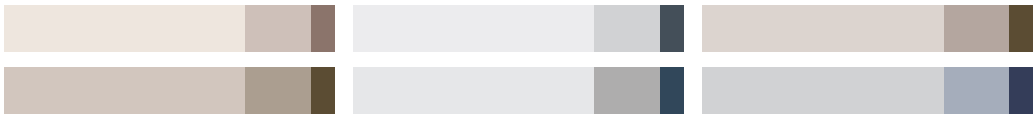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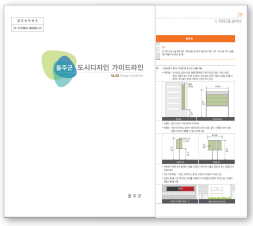

「울주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12읍면별, 유형별, 중점관리지역,
요소별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을 일부 준용하여 재정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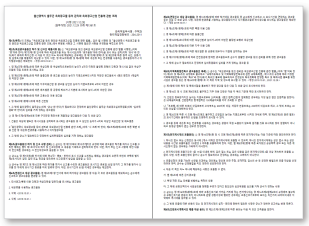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반영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울산역 주변
도심융합특구에 옥외광고물관련 항목을 반영함

| 공통 사항

- 「울주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요소별 가이드라인 및 「2035 울주군 경관계획」의 권역별, 유형별,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가이드라인에서 중복 적용 가능한 항목임

| 권역별 가이드라인

- 과도한 규제 방지를 위해 울주군 경관권역별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지침으로 제시

복합문화경관권역	- 산림주변 관광지의 경관난립 방지를 위해 부착형 광고물 사용 금지 -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은 상업지역별로 디자인 스타일 통일 권장
활력정주경관권역	- 상업가로 내 업무 및 상업건축물 옥외광고물 색채는 유사하게 정돈
그린산업경관권역	- 산단 주변 근린상업시설 간판은 고채도 색채, 캘리그라피 폰트 지양

| 유형별 가이드라인

- 자연산림 / 수변 / 농산어촌 / 시가지 / 산업 / 도시기반 / 역사문화 / 지역상징 / 관문 9가지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샘플] - 9개 유형 중 대표적 2가지 유형을 발표파일에 수록

자연산림경관 가이드라인	- 나무, 석재, 금속재 등 원재료의 색과 질감 사용 - 실사사진과 같은 풀컬러 사용은 간판면적 전체의 1/10을 넘지 않도록 계획
수경관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및 주변과 조화를 위해 가급적 2색, 또는 최대 3색의 배색으로 표현

|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가이드라인

- 울주군의 14개 중점경관관리구역별 현황에 맞춤화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내용 수립

[샘플] - 9가지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간소화하여 수록(5가지 경관지구 관련 내용은 중점경관관리구역가이드라인 페이지에 수록)

등억온천	- 건축물 상층부 및 옥상에 고채도의 간판, 네온사인 설치 지양 - 돌출형 광고물의 가로폭은 게시틀 접합부를 포함하여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봉계한우 불고기특구	-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10m 미만으로 하며 1면의 면적은 50㎡를, 간판면적의 한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서생해안	- 입간판 설치 시 통행 및 조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의 해안쪽이 아닌 육지쪽에 설치 - 색채는 가급적 최대 3색 이내의 배색으로 표현
진하 해수욕장	- 해안가 해풍, 부식 방지를 위해 해식에 강한 재료인 석재와 스틸소재 등 사용 - 빌딩명판 외 간판 설치는 3층까지 허용하고 인접 건축물의 간판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
언양읍성	- 언양읍성 외곽부터 20m이내의 상업시설은 광고물 전면 조명 설치를 금지 - 언양읍성의 전통성을 표현한 색채 사용 및 최대 3색의 배색으로 표현
KTX울산역역세권	- 가로형 간판은 업소별 광고물 개수를 2개로 제한 및 면적 최소화로 정돈된 경관을 연출
남창역	- 공용부분(창문과 창문사이, 계단실, 건축물 주출입구 등)에는 개별업소의 간판 표시 금지
덕하역	- 덕하로, 덕하장터길에는 건축면을 차폐하는 현수막, 부착형 광고물 설치 금지
망양역	- 망양2지구 구획정리지구의 2층 이상 업소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통일